



#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포커스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해피 CEO 인터뷰

플로우네트웍(주) 김정일 대표이사

기획탐방

'삼성LED' 특허 경영 현장을 찾아서

기획특집

발명특허 기네스

02

February 2010  
VOL . 403



INVENTION & PATENT



2010년 발명특허가족 신년인사회



89

## IP Report

- 12 기획탐방 '삼성LED' 특허 경영 현장을 찾아서
- 15 기획특집 발명특허 기네스
- 16 신춘특집 논문  
사상체질 중심의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 22 포커스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 28 특허확대경 우리은행사건
- 33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34 특허확대경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터의 법적 지위
- 38 시론 '권리' 로서의 지식재산권
- 42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10년 2월호 제 35권 제 2호(통권403호)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인 이평원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우 135-980)  
전 화 02)3459-2800(대)  
인 쇄 2010년 2월 3일  
발 행 2010년 2월 5일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 IP Column

- 44 발명강좌 쓸수록 좋아지는 머리
- 49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50 발명칼럼 기록과 수집의 진가
- 55 발명 365
- 56 발명칼럼II  
입학사정관제도에서 발명교육은 창의성 평가 기준이 된다
- 60 해피 CEO 인터뷰 플로우네트웍(주) 김정일 대표이사
- 62 지식재산강의 상표법, 특허법

## IP Information

- 80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 82 건강하게 삽시다 장애인의 구강보건관리
- 84 즐거운 퍼즐

## IP News

- 86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 88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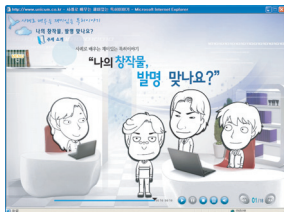
지식재산권  
이러닝  
무료교육  
사이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 learning

**new**

#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 NEW 신규콘텐츠 오픈

[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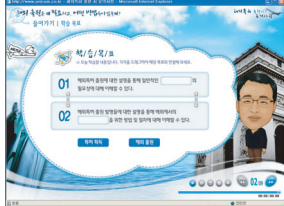
<사례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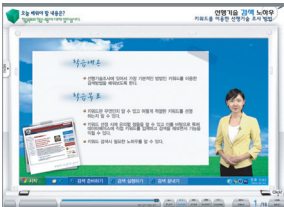
<사례로 알아보는 상표제도의 이해>



<IP경영진단백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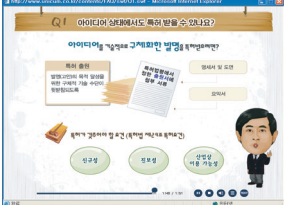
<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



<선행기술검색노하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FAQ로 알아보는 산재권 절차 및 IP경영>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관련 사례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 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상표제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 사례로 배우는 상표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의 IP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보고서 양식으로 제공하는

### IP-경영진단 백신 프로그램



IP 주요국가의 특허제도 비교 및 해외출원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 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



연구성과 보호의 중요성 및 보호방안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연구원 맞춤형 콘텐츠

###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국내 외 연구성과 보호사례를 실패사례 VS 우수사례를 비교 논문 작성 발표시 유의사항 등 연구원에게 맞춤형 지식재산권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산재권 절차 및 IP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필요한 내용만 쏙~욱 알 수 있는 과정

### FAQ로 알아보는 산재권 절차 및 IP경영

#### 수강신청방법

- general.ipacademy.net 접속 -> 교육과정 -> 수강신청 -> "나의강의실" 수강
- 문의처 : 이데미 계정 bolsu@kipa.org TEL: 02)3459-2773

#### 기업 연구기관 지식재산온라인 단체무료교육

- 기업 및 연구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유정호 주임 yjh6066@kipa.org TEL: 02)3459-2775

##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지식재산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

존경하는 고정식 특허청장님, 전임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발명특허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인사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 등으로 극심한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발 빠르게 대처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저력으로, 오히려 건국 이래 최고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은 물론, 연말에는 원전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승화시킨 한 해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발명활동으로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명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일찍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국가의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여기고, 여기에 모든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저력 있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발명특허가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 책무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하는 분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우수한 발명·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사업화해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비전과 시책을 펼쳐주시고 유관기관들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고객밀착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발명진흥회도 일선 발명가와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지식재산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조직혁신과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0년도 발명특허가족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고정식 특허청장님과, 전임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명특허가족 신년인사회

주요 인사 등 140여 명 참석, 새로운 각오 다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발명특허가족의 단합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지난 1월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 최홍건 특우회장, 전임 특허청장을 비롯해 발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발명특허가족 신년인사회' 를 개최했다.

사진설명 \_ 주요 인사들이 축하떡 자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이러닝  
무료교육  
사이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 learning

#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 신규 콘텐츠 오픈

www.ipacademy.net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제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

## 사례로 배우는 **new** 상표제도의 이해



### 학습 대상

창업희망자, (중소)기업 대표 또는 상표 담당 실무자

### 학습목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표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업희망자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법상의 여러 문제를 실사례 위주로 설명하여 브랜드 경영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는 상표제도를 이해한다.

### 학습 분량

총 10차시

### 강사

박중태 변리사 ( 안&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 주요학습내용

- 1차시 : 아니!! 우리가게 간판을 내리라니!!
- 2차시 : 그렇다면, 우리회사 상표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3차시 : '꽃보다 남자, 대장금'도 등록받을 수 있다고요?
- 4차시 : 거절이유가 통지 되었어요!!
- 5차시 : 특명!! 경쟁업체의 등록을 저지하라!!
- 6차시 : 라이선스를 통하여 수익창출을!!
- 7차시 : 상표가 유사한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 8차시 : 상표권 침해라는데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 9차시 : 내 상표가 취소라니요? 얼마나 공들인 상표인데!!
- 10차시 : 버버리가 상표등록되어 있는데도 버버리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요?

수강신청

지금 신청하세요!

모든 과정이 무료

접호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12월 23일 OPEN



### 수강신청방법

1. <http://general.ipacademy.net> -> 2. 로그인(회원가입) -> 3. 사이트 메인 메뉴 "강의보기"->"전체과정" 선택
4.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 5. '나의 강의실' 수강



#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 창출 전문가가 말하는 일의 해법

저자 류량도 | 출판사 쌤앤파커스

## 책소개

### 성과의 핵심은 당신의 역량!

성과를 창출하는 일의 해법이 담겨 있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이 책의 저자 류량도는 오로지 일하는 '전략' 과 '방법' 을 개선해 '역량' 을 키우는 것만이 일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어진 목표에 맞게 일을 설계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데 필요한 체크포인트, 자잘한 허드렛일에도 자신만의 관점을 녹여내 남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법, 데드라인을 준수하는 방법, 일 잘하는 사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는 프로세스, 선배들에게 일을 부탁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등 일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짚어 준다. 저자는 인맥관리 같은 그럴 듯해 보이는 '일회성 처방' 대신, 정직한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평생의 성과 창출법을 알려준다.

# 디자인 정보

## 조사서비스

### 디자인정보 조사서비스

#### 1. 디자인 조사서비스

##### ■ 디자인 선행자료 조사서비스

- 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DB (한국·일본·미국·WIPO·OHIM (유럽)·GE·과거해외공보·실용신안·카탈로그)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등록 가능성의 예측 및 경쟁사 디자인 동향 파악 등에 활용

##### ■ 우선심사용 조사서비스

- 빠른 출원을 원할 경우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후 디자인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조사서비스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이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누구나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디자인 무효·침해 조사서비스

디자인 분쟁에 관한 자료분석을 통해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무효 소송 및 침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

#### 3. 디자인정보 분석서비스

의뢰된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 디자인분야 연구개발테마와 관련된 출원 디자인의 배경과 관련 기술 등을 찾아 제공

#### 4. 디자인 맵 서비스

국내외 출원된 디자인 이미지 검색, 트렌드 분석, 포지셔닝 맵, 이미지 맵, 유사디자인분석, 분쟁디자인분석 등 사용자가 자유롭게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http://www.designmap.or.kr/>)



# 2010년 주요 국제발명품전시회 일정

## 참가전시회

전 시 명	전시기간	출품안내 및 접수	출품자 확정	전시단 파견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4. 21 ~ 4. 25	3월 2일(마감)	3월말	4월초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	5. 14 ~ 5. 16	3월초	4월말	5월 중순
피츠버그 국제발명품전시회	6. 16 ~ 6. 18	4월 중순	5월초	6월 중순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8. 26 ~ 8. 29	6월초	8월초	8월말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	9. 30 ~ 10. 3	7월초	8월말	9월말
영국 국제발명품전시회	10. 13 ~ 10. 16	7월말	9월말	10월 중순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	10. 28 ~ 10. 31	8월초	9월말	10월말
벨기에 국제발명품전시회	11. 18 ~ 11. 20	9월초	10월말	11월 중순

# 2010 제네바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출품참가자 모집

우리회는 국내발명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고, 제품 및 기술수출과 시장개척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2010 제네바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출품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 전시회 개요

- 전시명 : 2010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영문) : 38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New Techniques and Products
- 기 간 : 2010. 4. 21(수) ~ 4. 25(일) [5일간]
- 장 소 : Geneva Palexpo, Hall 7
- 주 최 : Salon International Des Invention
- 규 모 : 45개국 1,000여 점(2009년)

## ▶ 출 품 료

- 직접출품 : 9,400,000원(개인) / 10,500,000원(기업)
- 위탁출품 : 6,400,000원(개인) / 7,500,000원(기업)

## ▶ 출품자 특전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전시회 직접경비(부스로, 통역비 등)에 한하여 정부보조금을 연말에 예산범위 내에서 안분조정하여 출품자에게 지급
- 동 전시회에 출품한 발명품에 한하여 우리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전시관에 홍보지원
- 발명의 날 포상 신청 시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 신청기간 : 2010. 1. 27 ~ 3. 2

## ▶ 신청서

우리회 홈페이지(www.kipa.org)내 전시행사사업공고에서 모집요강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전자우편 (skh@kipa.org)으로 접수

## ▶ 문 의 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전화 : 02-3459-2796/2811)  
※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명인의 전당 관람안내

발명인의 전당	www.kipo.go.kr
관람가능시간	평일 09:00~18:00 (국경일/공휴일 제외)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소재)
관람연락처	전 화 : (042)481-5940 담당자 : 김명희

찾아오시는 길



# 2010 여성발명시제품제작지원사업

주최/주관: 특허청/한국여성발명협회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여성발명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2010년 여성발명시제품제작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여성발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국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 **지원대상**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우수 발명아이디어로서 제작되었거나 제작 중인 발명은 제외
- 1인 1건에 한하며,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여성발명경진대회 등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 발명 아이디어와 협회 정회원에 대해서는 우대
  - ※ 지원접수일 현재 출원 중인 발명아이디어도 지원 가능
  - ※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유지 결정을 받기 전의 고안에 한함

▶ **지원금액**

-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제작비용의 10% 또는 최대 지원 금액을 벗어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
  - ※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은 제작업체에 지원하여 제품이 완성된 후 신청인이 인수하는 형태임.
  - 단, 제작업체를 찾을 수 없는 소품의 경우 지원대상자와 직접 계약 후 소요재료비의 90%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해 지급

▶ **지원건수** : 30건 내외

-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3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제출서류** :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http://www.inventor.or.kr))에서 양식 내려 받아 작성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 02-538-2710



# IP Report

IP Column

IP Information



기획탐방 ‘삼성LED’ 특허 경영 현장을 찾아서	12
기획특집 발명특허 기네스	15
신춘특집 논문	
사상체질 중심의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16
포커스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22
특허확대경 우리은행사건	28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33
특허확대경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터의 법적 지위	34
시론 ‘권리’ 로서의 지식재산권	38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42

# 녹색성장 기술에서의 지재 중심 기술 획득 전략 실천

## ‘삼성LED’ 특허 경영 현장을 찾아서



삼성LED  
김재욱 대표이사

21세기 산업성장의 키워드는 “녹색성장” 산업이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견인한 석유화학 중심의 고에너지 소비형 산업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로 점점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어 저에너지 소비형 성장으로의 전환 여부가 향후 지속적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앞 다투어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감형 신사업 발굴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기술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분야가 LED 분야다.

LED란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순방향 전압을 가할 때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를 지칭하는데 1960년대 개발 이후 낮은 활용도로 인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청색 LED의 개발로 고휘도 백색LED가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그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더욱이 고효율 저에너지 제품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로 LED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2년 1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부가 2015년까

지 조명의 30%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는 ‘LED 조명 15/30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LED 원천기술 획득을 위해 2012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하는 등 LED 산업이 차세대 녹색성장 산업으로써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LED업계의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특허 장벽은 한국 등의 후발 기업으로 하여금 LED 산업의 핵심 Value chain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 LED는 특허 이슈가 끊이지 않는 기술 분야 중 하나다. 실제로 LED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 역시 특허를 둘러싼 발명자와 그를 고용했던 기업 간의 소송을 통해서였다. 청색LED의 발명자인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이전 직장인 니치아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0억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선고하였다. 비록 화해를 통해 소송은 마무리 되었으나 이 사건은 대중으로 하여금 LED 산업의 현황과 청색 LED 특허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메이저 기업 간의 특허 분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 LED 시장 선점을 위해 니치아와 도요타고세이는 1996년부터 십여 건의 특허소송을 상호 간 제기하여 2002년 화해로 마무리 하였으며 최근에는 서울반도체와 니치아 간의 특허 소송이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일단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동시에 엄청난 인력투입,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

이와 같은 특허 이슈의 존재는 LED 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LED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한국은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특허 공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LED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면 LCD 산업의 성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이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이에 따른 핵심 특허의 확보를 통한 특허 경쟁력 강화는 국내 LED 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 세계 1위로 도약하는데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4월에 출범한 삼성LED 역시 LED 산업에서의 특허가 가진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견고한 특허 장벽을 구축한 메이저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삼성LED가 가진 독자 기술의 특허 권리화로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경영진을 비롯하여 전체 임직원이 공유하고 이를 위해 역량을 투입하였다. 특히 삼성LED는 삼성전기가 가진 LED 기술에 삼성전자가 가진 반도체 양산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LED 관련 독자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결국 이와 같은 노력이 LED BLU(Back Light Unit) 핵심 특허의 확보 및 권리 강화로 이어지면서 작년 LED TV의 성공에 일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동시에 사내 특허팀 보강, 특허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조직의 특허 인식 제고 등의 인프라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특허 경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삼성LED의 특허 활동은 초대CEO인 김재욱 사장의 특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인한다. 반도체 공정 기술에 있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재욱 사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LED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생산, 고객 대응 등 모든 면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스피드 경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스피드 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 상 특허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재욱 사장은 “반도체 양산 기술에 대해 다수의 국내의 특허를 직접 출원한 경험이 경영에 있어 특허 및 특허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향후 특허경영이 삼성LED 내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LED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삼성LED는 국내 기업에서는 드물게 Top-down 방식의 특허 경영을 펼쳐 독자적 구조의 고효율 파워 LED칩, RED 형광체, conformal 코팅을 이용한 패키지 방법 등 독자적 기술을 개발, 핵심 특허를 확보하여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과 대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이 반도체나 휴대폰 산업에서 고속성장하여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LED 산업에서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ED 산업에서의 특허 경쟁력 확보는 국내 LED 기업이 해외 메이저 기업의 단순한 생산거점으로 활용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량생산과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 혼재된 LED 산업의 특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통한 윈-윈전략이 가능한 분야다. 따라서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삼성 LED의 특허경영이 해외 기업의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LED 산업의 특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내 LED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명특허 2010, 2

# 발명특허 기네스

인류의 신기술 개발 역사가 짧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특허제도의 역사 또한 짧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뿌리는 14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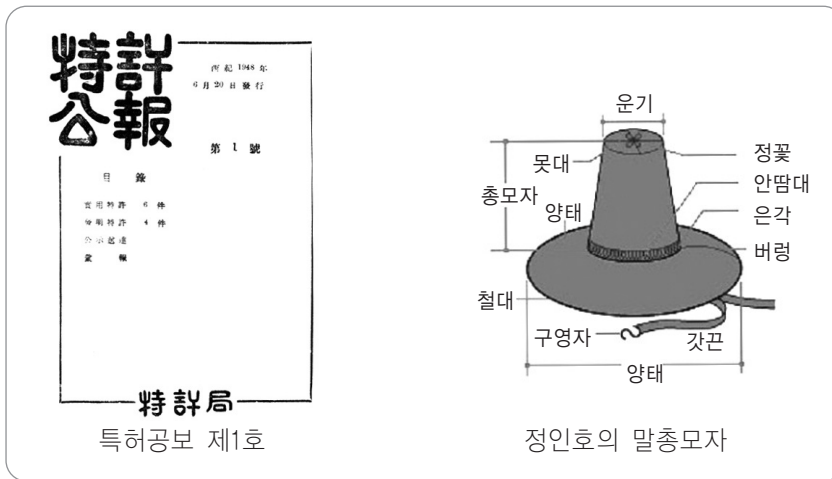
국가명은 베네치아공화국. 베네치아는 르네상스시대인 이때 벌써 10년간 특허권을 주었다. 실로 선각자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제도는 1475년부터 1550년까지 약 75년간이나 존속되었고, 그 동안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왔다. 이 기간 중인 1594년에는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양수·관계용 장치'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은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이다.

이어 8·15해방 후, 과도기의 특허제도 운영을 위하여 1946년 10월 5일 미국정법령 제91호로 이른바 '1946년 특허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특허제도가 전면 개정된 것은 1961년이다. 비로소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이달부터 연속기획특집으로 국내외의 최초의 발명특허관련 물품을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1948년 6월 20일 발행된 특허공보 제1호에는 실용특허 6건과 발명특허 4건이 실려 있다. 실용특허 등록 제1호는 신경철의 '아동용 보건 차'였으며, 발명특허 제1호는 1947년 2월 14일 출원(제368호)되어 1948년 6월 20일 공고되고 1948년 11월 20일 등록된 '황화염료 제조법'.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장, 발명인은 이범순·김찬구였다.

한편,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에 의해 등록된 최초의 특허 1호는 정인호의 '말총 모자'였다.

(자료제공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 사상체질 중심의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윤 상 원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주임교수  
공학박사, 기술사  
한국대학발명협회 부회장  
대한노인과학발명협회 연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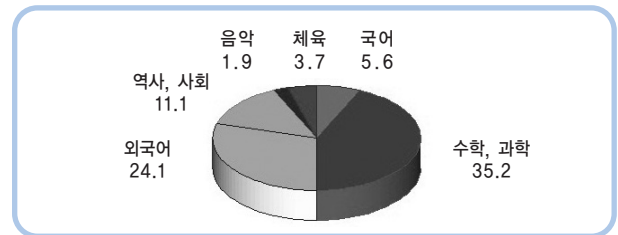
## 체질별 발명관련 과목선호도 조사분석

본 조사분석 결과는 수도권 대상 남녀 고교 수험생 총 3,474명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석 한의사 팀이 연구된 결과로서, 연구 동기는 한의학 이론에서는 인간의 체질이 다르면 성격도 다르며, 더욱 성격이 다르면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체질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록 한의학분야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발명교육의 문제점을 돌파하고, 활성화하는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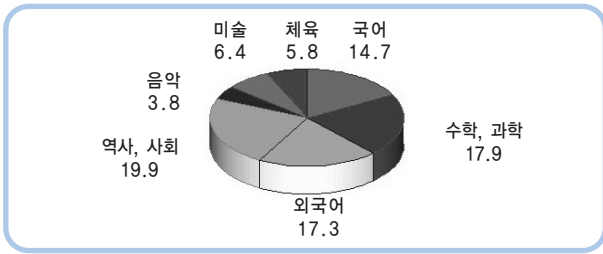
## 태음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 ① 상위 9% 이상에 속한 태음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54명)
- (1) 국어 3명 5.6%
  - (2) 수학, 과학 19명 35.2%
  - (3) 외국어 13명 24.1%

- (4) 역사, 사회 6명 11.1%
- (5) 음악 1명 1.9%
- (6) 미술 0명 0.0%
- (7) 체육 2명 3.7%



- ② 31 ~ 50% 사이에 속한 태음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156명)
- (1) 국어 23명 14.7%
  - (2) 수학, 과학 28명 17.9%
  - (3) 외국어 27명 17.3%
  - (4) 역사, 사회 31명 19.9%
  - (5) 음악 6명 3.8%
  - (6) 미술 10명 6.4%
  - (7) 체육 9명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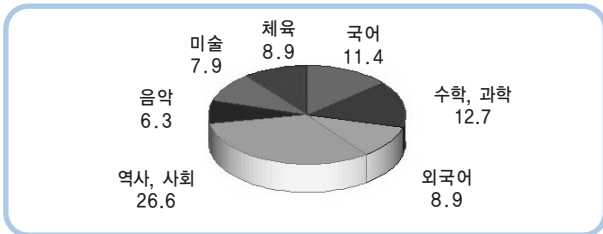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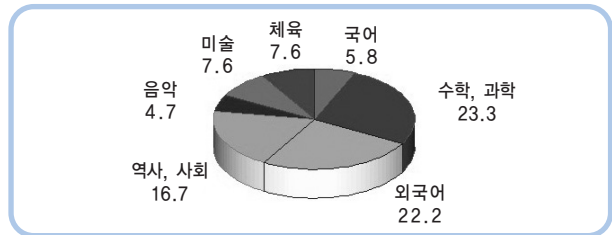


③ 하위 76% 이하에 속한 태음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결과 분석 (답변 79명)

- (1) 국어 9명 11.4%
- (2) 수학, 과학 10명 12.7%
- (3) 외국어 7명 8.9%
- (4) 역사, 사회 21명 26.6%
- (5) 음악 5명 6.3%
- (6) 미술 6명 7.9%
- (7) 체육 7명 8.9%

② 31 ~ 50% 사이에 속한 소음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결과 분석 (답변 275명)

- (1) 국어 16명 5.8%
- (2) 수학, 과학 64명 23.3%
- (3) 외국어 61명 22.2%
- (4) 역사, 사회 46명 16.7%
- (5) 음악 13명 4.7%
- (6) 미술 21명 7.6%
- (7) 체육 21명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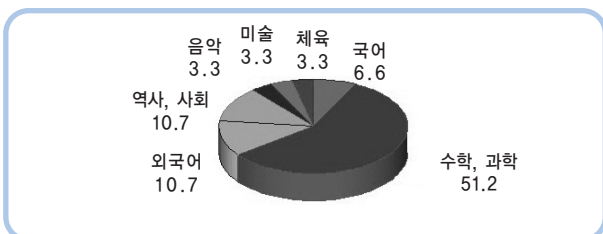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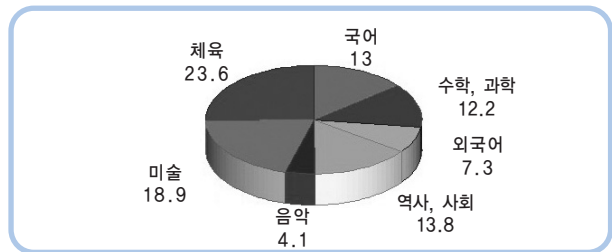
소음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① 상위 9% 이상에 속한 소음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결과 분석 (답변 121명)

- (1) 국어 8명 6.6%
- (2) 수학, 과학 62명 51.2%
- (3) 외국어 13명 10.7%
- (4) 역사, 사회 13명 10.7%
- (5) 음악 4명 3.3%
- (6) 미술 4명 3.3%
- (7) 체육 4명 3.3%

③ 하위 76% 이하에 속한 소음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123명)

- (1) 국어 16명 13.0%
- (2) 수학, 과학 15명 12.2%
- (3) 외국어 9명 7.3%
- (4) 역사, 사회 17명 13.8%
- (5) 음악 5명 4.1%
- (6) 미술 11명 8.9%
- (7) 체육 29명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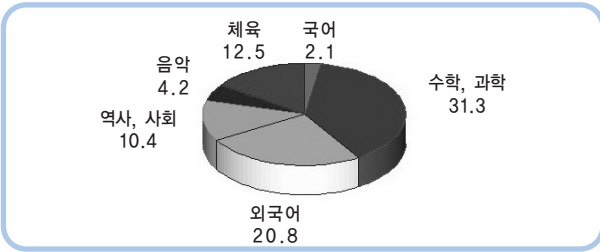


소양인이 좋아하는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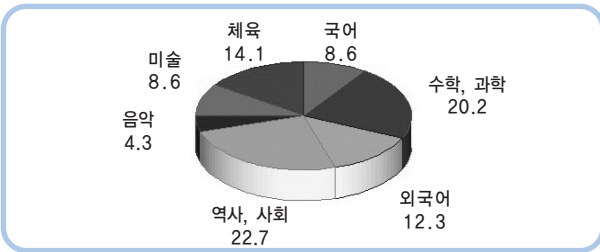
① 상위 9% 이상에 속한 소양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48명)

- (1) 국어 1명 2.1%
- (2) 수학, 과학 15명 31.3%
- (3) 외국어 10명 20.8%
- (4) 역사, 사회 5명 10.4%
- (5) 음악 2명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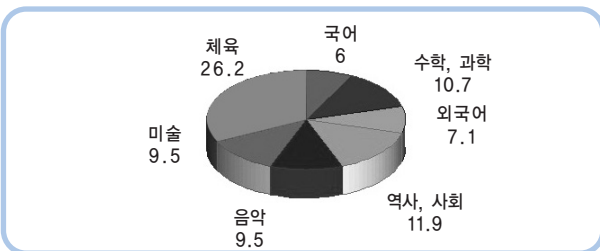
- (6) 미술 0명 0.0%
- (7) 체육 6명 12.5%



- ② 31 ~ 50% 사이에 속한 소양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163명)
- (1) 국어 14명 8.6%
  - (2) 수학, 과학 33명 20.2%
  - (3) 외국어 20명 12.3%
  - (4) 역사, 사회 37명 22.7%
  - (5) 음악 7명 4.3%
  - (6) 미술 14명 8.6%
  - (7) 체육 23명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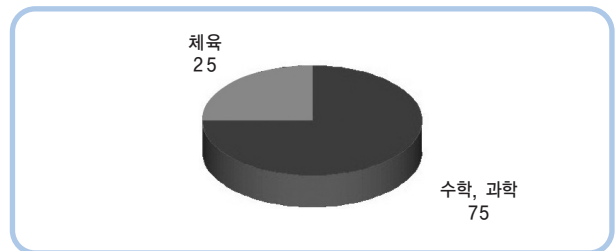


- ③ 하위 76% 이하에 속한 소양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84명)
- (1) 국어 5명 6.0%
  - (2) 수학, 과학 9명 10.7%
  - (3) 외국어 6명 7.1%
  - (4) 역사, 사회 10명 11.9%
  - (5) 음악 8명 9.5%
  - (6) 미술 8명 9.5%
  - (7) 체육 22명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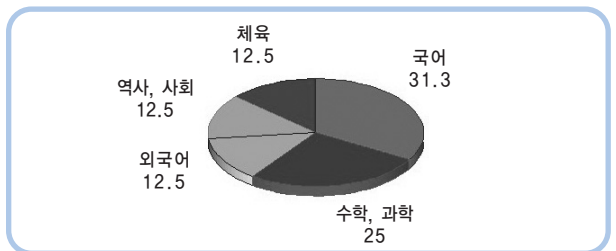


**태양인이 좋아하는 과목**

- ① 상위 9% 이상에 속한 태양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8명)
- (1) 국어 0명 0.0%
  - (2) 수학, 과학 6명 75.0%
  - (3) 외국어 0명 0.0%
  - (4) 역사, 사회 0명 0.0%
  - (5) 음악 0명 0.0%
  - (6) 미술 0명 0.0%
  - (7) 체육 2명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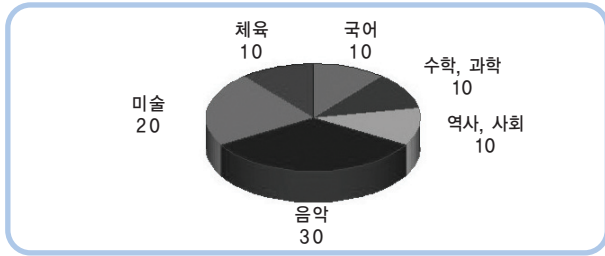


- ② 31 ~ 50% 사이에 속한 태양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16명)
- (1) 국어 5명 31.3%
  - (2) 수학, 과학 4명 25.0%
  - (3) 외국어 2명 12.5%
  - (4) 역사, 사회 2명 12.5%
  - (5) 음악 0명 0.0%
  - (6) 미술 0명 0.0%
  - (7) 체육 2명 12.5%



- ③ 하위 76% 이하에 속한 태양인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 결과 분석 (답변 10명)
- (1) 국어 1명 10.0%
  - (2) 수학, 과학 1명 10.0%
  - (3) 외국어 0명 0.0%
  - (4) 역사, 사회 1명 10.0%
  - (5) 음악 3명 30.0%

- (6) 미술 2명 20.0%
- (7) 체육 1명 10.0%



상기 분석 결과를 발명교육관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태음인 체질학생들을 보면 상위층 학생들은 주로 수학, 과학 관련 과목에서 선호하는 과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 하위 층 학생들은 인문사회 관련 과목이 역사, 사회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음인 체질 학생들은 중위 층 학생들까지 자연계 관련 과목인 수학, 과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하위 층 학생들은 태음인 학생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양인 학생들을 보면, 상, 중위 층 모두 비슷하게 자연계 및 인문계 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소양인의 전형적인 체질차이라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태양인 체질은 상위층이 선호하는 과목은 다른 체질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위 층은 인문관련 과목, 하위 층은 이색적으로 음악계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순분석의 결과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상담과 함께 체질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저마다의 개인 소질을 극대화하는 발명교육 방향이 정립되리라 보여 진다.

### 체질별 발명교육 방향

#### 체질별 감성특성에 따른 발명교육

##### 태음인(太陰人) 학생

고상한 색깔을 좋아하고 점잖고, 유행에 둔감하며 세련되지 못하는 감성경향이 있다.

##### 소양인(少陽人) 학생

개성적이고 대담하며, 미적 감각과 유행 감각이 있다. 한가지나 한 스타일에 싫증을 빨리 느끼는 편이고 변화를 좋아하고 새것을 좋아한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나중에 후회를 잘

한다.

##### 소음인(少陰人) 학생

세련된 멋쟁이타입의 감성을 갖고 있다. 충동적이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는 관찰형 타입이다.

#### 체질별 소질이나 취미에 따른 발명교육

##### 태음인(太陰人) 학생

음치가 많고 술기운에 의존해 흥을 돋우려는 경향이 있다. 도박이나 잡기에 능하고 승부를 거루는 오락에 강하다. 한탕주의나 크게 먹으려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는 거의 미칠 정도로 몰두한다.

##### 소양인(少陽人) 학생

흥을 잘 돋우고 분위기를 잘 이끄는 재주가 있다. 재치와 유머가 풍부하고 사람들을 잘 웃긴다. 세심한 관찰력이나 집중력은 부족하여 도박이나 승부를 거루는 오락 등에는 소질이 없다. 실수를 잘하는 편이다.

##### 소음인(少陰人) 학생

잔재미는 없는 편이고 관찰력이 좋다. 물건 만들기나 조립하기 등에 소질이 있고 손재주가 좋아 만물박사인 경우가 많다. 도박이나 오락을 할 때도 안전주의로 조심스럽게 즐긴다. 바둑이나 장기, 퍼즐게임 등 지적인 오락에 강하다.

#### 체질별 인간관계 특성에 따른 발명교육

##### 태음인(太陰人) 학생

대체로 지시에 순종하는 편이다. 허나 반응이 늦고 일 처리가 더딘 편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일이나 빠른 일 처리에는 맡기지 않는 편이 낮고 신중을 기하는 일, 끈기 집념, 승부를 요하는 일에는 적합하다. 가끔 자기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는 중간에 묵살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고 그의 주장이 옳으면 수용해주고 옳지 않으면 차분한 어조로 설득하는 발명교육 철학이 필요하다.

##### 소양인(少陽人) 학생

명랑하고 정직하며 친우애나 학교 조직생활도 잘하는 편이다. 희생정신도 좋아 남들이 싫어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수가 많다. 허나 일에 실수가 많고 꼼꼼한 면은 적다. 긴급을 요하는 일이나 순간적 판단력, 재치를 요하는 일에는 적합하나 신중할일, 섬세한 일, 지속적인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

신 움직임이 많은 행동적인 일이 적합하다. 다소 기분만 맞추어주고 적절히 칭찬을 해주면 일을 잘해나간다. 의리도 좋은 편이다.

**소음인(少陰人) 학생**

지시에 잘 순종하고 반대의견이나 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는 편이다. 일도 꼼꼼하게 잘해나가고 치밀한 편이다.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는 적임자이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돌아서서 비판을 많이 하고 감정이 상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하는 편이다. 소음인 학생을 꾸짖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은 피하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되도록 삼가 하는 게 좋다. 소음인학생에게는 활동성이 많은 발명은 적합하지 않고, 대신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발명 등에 적합하다.

**체질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발명교육**

**체질에 따른 학생발명 능력 극대화 방안**

**태음인(太陰人) 학생**

심장과 폐가 약하니 담배를 끊도록 하고 술을 적게 마셔라.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등을 많이 하고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등산이 좋다. 상체운동을 많이 한다. 성인병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을 조심하라. 유산균음료를 많이 먹어서 혈액을 정화시키고 장을 튼튼히 해준다. 폭음폭식은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좋다.

**소양인(少陽人) 학생**

신장이 약하니 성욕을 자제하고 아침마다 냉수를 마셔 위열을 제거해준다. 꿀과 인삼 등은 피하고 하체운동을 주로 하라.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조루증, 불임증 등을 조심하라. 조깅, 축구, 등산, 사이클, 낚시, 바둑 등이 좋다

(표 2) 체질간 발명교육 분석표

구 분	장 점	단 점	키포인트
태음인과 태음인 학생	태음인학생끼리 발명수행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마찰 또한 적다.	간혹 격렬한 설전을 벌일 수도 있고, 둘 다 보스 기질이 강하므로 대등한 입장일 경우에는 주도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동일 발명을 시작하기 전, 발명의 한계나 권한 등을 명확히 구분짓는 것이 좋다.
태음인과 소양인 학생	서로의 발명 작업의 분담화만 이루어지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끈기와 계획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나 내부적 일처리는 태음인 학생이 맡고, 빠른 판단력과 민첩함이 요구되는 작업 소양인 학생이 맡으면, 간혹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쉽게 해소될 수 있다.	태음인 학생은 자기주장대로 밀고 나가려는 기질과 욕심이 강한 반면, 소양인 학생은 욕심이 적고 이해 타산을 크게 따지지 않는 기질이 있어 자칫 소양인 학생이 손해 볼 우려가 있다.	동일 발명을 수행 하더라도 태음인 학생이 보스 역할을 하고, 소양인 학생은 후원자나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발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욱 좋은 방법이다.
태음인과 소음인 학생	발명 작업 수행 조화가 괜찮은 편이다. 특히 소음인 학생에게는 태음인 학생이 가장 적합한 작업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상황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여,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기 쉽다. 리더 역할 문제로 인한 갈등은 적으나,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상황 변화에 재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나친 신중함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전 문제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소양인과 소음인 학생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반된 기질을 서로 조화시키기 힘들 때가 많다.	마찰이 잦고, 서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이 빠르고 챙기기를 잘 하는 소음인 학생에 의해, 소양인 학생이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작업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소양인 학생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이해심을 바탕으로 영업이나 대인 관계수행 작업 등은 소양인 학생이 맡고, 치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이나 금전 관리는 소음인 학생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양인과 소양인 학생	이해관계가 별로없는 일반 작업같은 것을 함께하면 잘해 낼 수 있다.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이 적고 상황변화에 재빨리 대응 할 수 있다.	갈등의 소지가 많다. 승부근성, 조직력, 신중함 등이 부족하여 실패할 확률이 크다. 내부적 일처리, 사무, 자금관리 분야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 소양인 학생 끼리의 발명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음인과 소음인 학생	서로 신중한 기질이므로 작업을 그를 칠 염려는 없다. 그러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밀한 기술발명분야 등에서 강하다.	별로 바람직스러운 협력 작업 관계가 되지 못한다. 겉으로는 큰 충돌이 없지만, 내면적 갈등과 불신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상황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는 소음인 학생끼리 동일 발명 작업 수행은 그다지 많지 않다.
태양인과 태양인 학생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이나 첨단관련 발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협력 작업 파트너 관계가 나쁜 편이다. 반목과 충돌이 잦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태양인학생과 태음인학생, 태양인 학생과 소음인 학생의 협력 작업 파트너 관계도 좋은 편이 못된다.

소음인(少陰人) 학생

비위가 약하니 과식을 피하고 찬 음식을 피하라.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하고 수영이나 스케이팅, 명상, 비독, 장기 등 땀을 흘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즐겨라. 상체운동을 많이 한다. 잔병을 조심하라. 소화기질환, 신경성질환, 수족냉증, 차멀미, 추위타는 병 등을 조심하라

결론

체질이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기원이 오래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동무 이제마의 사상체질이론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체질의학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간을 획일적으로 간주하고, 더욱이 사람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마는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체질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별됨을 밝히고, 체질별로 생리, 병리 및 치료약리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비로서 체질이론이 성립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 사상의학이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 않는 용어로 인식되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질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건강유지 등을 위해 사상체질이론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사상체질은 기존의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질병치료를 적용되어 큰 효과를 인정 받아온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특히 발명교육의 새로운 발전모델로서 한국형 사상체질이론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겠다. 학생들의 발명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명자체에 목적을 둔다는 것은 항상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명 그 자체의 결과를 중시하고 전시적인 효과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기계적인 사고, 피동적인 발명 형이상학적 발명위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발명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형이상학적 발명이 되어야만 발명의 존엄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인간적인 발명, 인간중심의 발명, 살아있는 발명, 생명력과 영속성이 있는 성공적인 발명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상체질이론은 그 중심축 선상에서 일조하리라 보여진다.

참고문헌

1. 김석 외, 체질학습법(1, 2), 민예원, 1997.
2. 손병욱, 사상의학의 이해(上)(下), 행림출판, 1997.
3.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의학, 하나미디어, 1993.
4. 윤길영, 사상체질의학론, 명보출판사, 1986.
5. 이의원, 인간, 세상 그리고 체질의학, (주)삼화출판사, 1996.
6. 이철호, 체질대로살면 생활이 즐겁다, 기린원, 1994.
7. 홍정용, 이을호, 사상의학원론, 행림서원, 1977.
8. 김병오 「초·중학교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지역 지역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9. 김선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의 표준화 연구”, 경희대학교, 1996.
10. 김재욱 “공업계 고등학교의 산업재산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계공학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11. 박성식, 송일병, “사상의학의 의학적 연원과 이제마 의학사상에 대한연구”, 사상의학회지, 제5권 1호 (7), 1993.
12. 박천기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특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3.
13. 박윤희 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14. 이강환 외 「대학발명활동촉진 세미나」 한국발명진흥회 2002.
15. Sun ho Kim, “An Introduc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omepage and Utilization of QSCC II(International Version)”, ICOM(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1998(7).

발명특허 2010. 2

#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 엄정한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엔트리  
 서울대, 공주대, 경상대, 강원대 지식재산권 특강  
 저서 : 특허법 에센스

### <제1회 - 필기도구 편>

최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이 2050년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 부국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마땅한 ‘자원’ 이 없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富國’의 실현은 ‘기술’ 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물의 수출로만 가능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70년대 캐치프레이즈가 ‘지식재산강국 실현!’이라는 21세기형 명제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다.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로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국외로 수출해야 하는 KR표 수익구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의 대한민국은 멋진 ‘제품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야 강력한 경쟁국들의 틈바구니를 벗어나 세계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 만큼의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

산권은 그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림 1]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강력한 제품을 기획할 수 있듯이, 특허문헌을 분석하여 히트 제품의 가치요소를 분석(리버스 포트폴리오)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특허는 중요하다. 하지만 ‘특허가 중요하다! 특허가 곧 국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보다는 특허를 활용하여 ‘멋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보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공한 제품의 특허문헌을 분석하여 가치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차별화된 요소들을 응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특허활용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재에서는 특허

등에 관한 어려운 이론적 접근은 잠시 접어두고 ‘멋진 제품’ 과 그 제품에 들어간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특허 활용법’ 에 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 또는 회사와 같은 단일 개체에 의해 소유된 특허의 집합인 특허포트폴리오를 우선 수립하고 제품을 개발하던 방식을 역으로 적용하여, 특허문헌 분석을 통해 분야별 히트상품의 가치요소를 찾아내는 ‘리버스 포트폴리오 (Rivers Portfolio)’ 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째로, 문구류 시장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필기구(pen)들을 모아서 이들의 히트요소를 알아보도록 하자.

### 태초에 볼펜이 없었으니...

196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볼펜이 존재하지 않았다. 잉크를 묻혀 쓰던 칠필과 만년필만이 연필을 대체하는 필기구였으며, 볼펜이라는 것은 소수의 외신기자들만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자펜’ 으로 불렸었다. 이후, 모나미에서 153볼펜을 출시하였고, 그야말로 ‘펜대 좀 굴리는 사람들’ 의 노력(기술개발)에 의하여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자체개발한 뛰어난 기능을 가진 볼펜들이 연간 700만 볼 이상 수출(2008년 기준)되고 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필기구류의 경우, 아주 미세한 차이에 의한 소비자의 반응이 신속하게 표현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특허로 권리화하여 제품개발에 투입된 노력을 수성하고 있는 사례들을 만나보자.



그림 2 펜시점에 전시된 다양한 펜들. 펜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특허기술들이 배양되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1. 쓰리엠 포스트잇 플래그펜

점착성 메모지의 대명사인 포스트잇, 투명테이프의 대명사인 스카치테이프와 같은 메가히트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쓰리엠에서 내놓은 플래그펜. 필기와 동시에 핵심부분에 표시형 테이프인 플래그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필기구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펜의 몸통부분에 포스트잇 플래그를 부가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플래그펜의 초기모델은 일반적인 유성매직과 비슷한 두께에 1mm 직경의 볼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필기감을 가지고 있으나, 잉크가 잘 묻히는 편이고, 삼각단면을 가지는 그립부분은 펜촉 부분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필기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의 신선함과 브랜드 파워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으며, 저렴한 가격 덕분에 판촉용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힘입어 직경 0.5mm의 볼을 가진 고급형 모델이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가격도 인상되었다.



그림 3 한국쓰리엠의 플래그 펜과 플래그형광펜



그림 4 한국쓰리엠의 개량된 플래그 젤펜

이러한 플래그펜의 발명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발명자의 생각은 특허문헌에서 직접 엿볼 수 있다. 특히,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부분에서 발명자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들어난다.

쓰리엠社의 플래그 펜은 등록번호 10-0871941호의 ‘시트 디스펜서가 있는 필기구’ 라는 제목의 발명으로 권리화되어 있다. 이미 2001년 6월 28일에 미국에서 출원된

60/301,641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서 권리를 등록받은 경우이다. 발명자는 본 특허문헌에서 쓰리엠사에서 이미 출원하여 등록받은 미국특허 제4,770,320호의 ‘분배가능한 시트 재료 스택’을 언급하면서 필기구와 시트 모두를 쉽고 편리하게 수용하는 발명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관상 만족스러운 고풍택 표면처리를 위하여 볼펜의 몸체를 ABS, 즉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플래그를 적층시키되 얇은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플래그 스택을 적층시킬때 Z-폴딩 배열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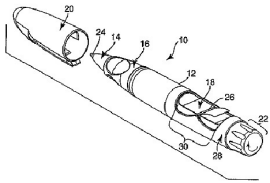


그림 5) 등록번호 10-0871941호의 ‘시트 디스펜서가 있는 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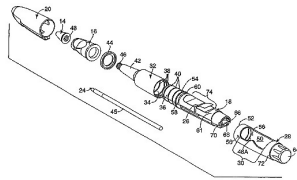


그림 6) 플래그 펜을 겹쳐서 관찰했을 때와 달리, 많은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관상으로는 단순한 볼펜과 플래그의 결합인 것 같은 플래그 펜도 약 20개 이상의 요소(또는 특정 기능을 위한 구조)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 하나하나에 발명자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모리스 노크식 형광펜

볼펜이 만년필이나 붓보다 편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뚜껑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급 몽블랑 만년필이라 하더라도 잉크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뚜껑이 필요하다. 플러스펜이나 형광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뚜껑을 분실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잉크의 휘발성 때문이다. 형광펜의 경우, 이미 기재된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주된 필기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뚜껑을 열고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이 언제 나타날지 독자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필기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광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시간 동안 평균 10~20회 이상 뚜껑을 뺐다 꺾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러한 불편은 상당한 것이었다.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모리스에서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5년의 연구 끝에 뚜껑 없는 형광펜을 개발했다. 이 회사에서는 뚜껑 없는 노크식 형광펜에 ‘퀵 마크’라는 브랜드를 붙여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전세계 120여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여개의 국내/해외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종 유명 블로그 등에 소개되고 있고, 모리스의 홈페이지에 구매요청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그림 7) 기존의 일반적인 형광펜



그림 8) (주)모리스의 노크식 형광펜

‘퀵 마크’가 성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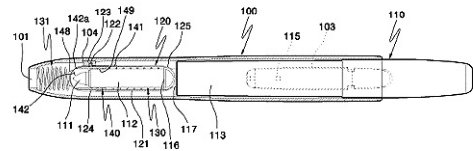


그림 9) 등록특허 제10-0649611호의 푸시형 마름방지용 출몰식 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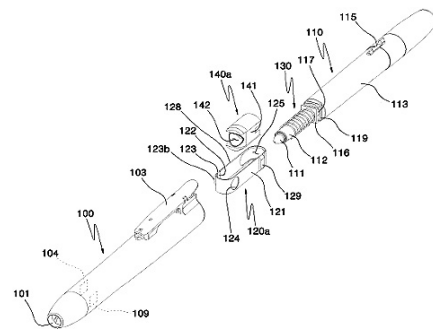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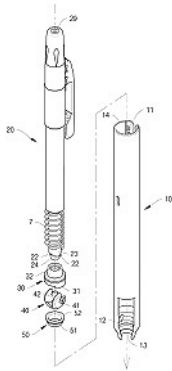


그림 10) 등록특허 제10-0649611호의 부품구성

등록특허 제10-0649611호의 등록특허공보를 보면 발명이 속한 분야의 종래기술에 대하여 자세한 기재가 되어 있다. 종래 닙펜(잉크방출을 위한 닙을 펜의 몸체 안에 가지고 있는 펜)의 유형을 고정식, 회전식, 노크식, 출몰식으로 분류하고, 종래기술인 일본특허 1987-0012570 외 4개의 선행특허를 분석하여 종래기술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발명자는 이러한 종래 선행특허의 문제점인 '공기유입에 따른 잉크 마름현상'을 해결하고자 신속한 출몰이 가능하고, 최소의 조립부품으로 간소화된 구성을 가지며, 밀폐효과를 개선시킨 출몰식 필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자는 이동가능한 푸싱오링을 중심으로 움직 도르래와 유사한 간접 힘 전달 방식을 구현하여 푸시부의 회동에 따른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신속한 닙의 출몰이 가능하게 되었고, 공기중 잉크의 노출시간을 최소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스프링의 구조를 독특하게 설계하여 잉크 카트리지를 신속하게 원위치 시키도록 하였고, 효율적으로 잉크의 소비를 최소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11] 등록특허 10-0772596호인 미름방지장치를 구비한 출몰식 필기구



[그림 12] 개량형 제품인 슬림타입 노크식 형광펜

모리스에서는 '퀵 마크'의 성공에 힘입어 개량형 형광펜을 개발하였고, 보다 슬림하고 간단한 부품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슬림타입 노크식 슬림형 마카는 필기구의 종주국 일본의 유명 필기구 회사인 펜텔(Pentel)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인기가 높아 국내에까지 역수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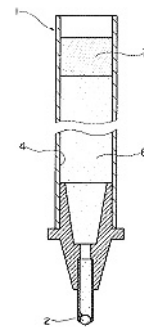
### 3.파이롯트 프리션볼

볼펜과 연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워진다'는 점일 것이다. 볼펜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지워지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필기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전의 히트작품인 HITEC-C 볼펜을 개발하여 일본과 한국의 필기구 시장을 재패한 파이롯트社は 이러한 볼펜의 '지울 수 없는' 한계점을 무너트렸다. 2007년 3월에 출시한 '프리션볼'이라는 제품이 그것인데, 이 제품은 출시 초기에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텔레비전 광고를 1개월 연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210엔(약 2500원)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3000만 자루가 팔리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림 13]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프리션볼'

'프리션볼'의 특징은 간단하다. 섭씨 65도에 이르면 투명해지는 잉크를 사용하여, 펜의 끝단에 달려있는 플라스틱으로 마찰을 가하면 마찰열에 의해 잉크가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파이롯트社は 30년 전부터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잉크를 개발하였으며 2007년에서야 일정 온도에서 투명해지는 잉크를 완성시켜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을 얻은 것이다.



[그림 14] 일본등록특허 제3718752호에 기재된 프리션볼 잉크의 실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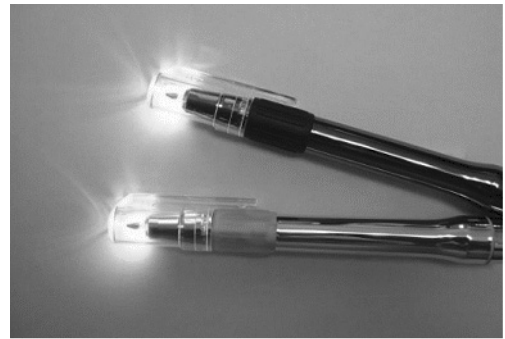
프릭션볼은 '특정온도에서 무색으로 변하는 잉크' 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1995. 11. 02에 출원되어 2005. 09. 16에 등록된 일본등록특허 제3718752호 '열 변색성 수성 볼펜 잉크 및 그것을 이용한 볼펜' 을 살펴보자. 발명자는 기존의 볼펜들이 필기 후 소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정온도에서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 변색성 미소캡슐 안료를 개발하였다. 열 변색성 미소캡슐 안료는 용매인 염료에 0.5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소캡슐을 포함시켜 열에 의한 색상변이를 유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발명이다. 발명자는 미소캡슐의 크기 및 염료와의 중량비율을 실험하였고, 미소캡슐의 중량이 전체 중량대비 20% 이상 40% 이하인 경우 잉크의 토출이 가장 원활하다고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잉크로 필기된 내용은 플라스틱 소거부의 마찰에 의하여 쉽게 변색(무색) 되며, 연필로 기재된 내용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 깔끔한 뒷처리가 가능한 '대박 볼펜' 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5] 프릭션볼로 기재한 글씨는 65도 이상의 마찰열로 간단하게 지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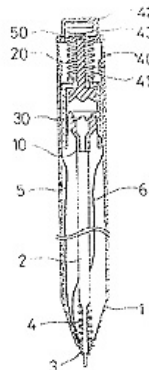
#### 4. 길라씨엔아이 반디펜

'어두운 곳에서도 필기가 가능한 펜' 일명 '반디펜' 으로 불리는 길라씨엔아이의 라이트펜은 96년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 은상과 미국 발명전시회 금상 등을 받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필기구이다. 경찰장비 전문업체인 익산실업을 창업해 경찰장비를 납품하던 김동환 대표가 교통경찰관이 오른쪽 목과 어깨 사이에 플래시를 끼고 메모하는 불편한 모습에 착상하여 '라이트' 와 '펜' 을 결합한 발명품이다. 아이디어를 얻은 김동환 대표는 2년간 6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994년 볼펜 앞부분에 발광다이오드를 붙여 빛이 나오는 볼펜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전 세계 25개국을 상대로 누적매출 600억 원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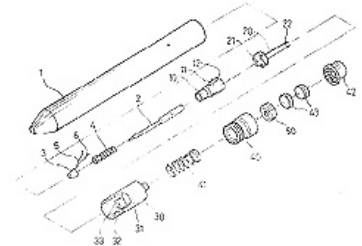


[그림 16] LED라이트가 부기된 '반디펜' 하나로 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초 반디펜의 특허문서상 명칭은 '버튼작동식 발광펜' 이다. 등록특허 제10-0167840호인 본 특허는 1995년 12월 21일에 출원되어 1998년 9월에 등록되었고, 총 7페이지의 간단한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존의 라이트펜이 필기심이 노출될 때마다 무조건 조명이 켜지도록 구성되어 조명이 불필요한 주간 등의 경우 배터리 낭비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존 발명들이 펜의 출퇴를 위한 버튼과 조명을 위한 스위치가 별도로 이루어져 있어 불편함을 언급하면서 필기심 출퇴용 버튼의 작동과 조명 스위치 조작을 연동시켜 간편하게 필기심 출퇴와 조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명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림 17] 등록특허 제10-0167840호의 구성도. (3번이 발광부이다.



[그림 18] 등록특허 제10-0167840호의 부품구성도

발명자는 본 특허문헌에서 상기와 같은 구조적 솔루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길이방향 슬라이딩 및 회전이 가능한 회전슬라이더, 길이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조작버튼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펜촉 부분의 발광체를 ON/OFF 시키도록

구성하였고, 동시에 필기심의 출퇴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 5.모나미 시그마플로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다보면 화이트보드용 마커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마커는 대부분 알코올을 용제로 쓴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깜빡해서 뚜껑을 잠시 열어두더라도 알코올의 휘발성에 의해 마커를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뚜껑을 열어놓지 않더라도, 필기를 장시간 하게 되면 잉크가 휘발되어 강의도중 마커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 500원 수준인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많은 마커를 배치하면 되긴 하지만, 그나마 화이트보드 하단의 마커거치대가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진다. 2008년 초에 모나미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쉽게 증발이 되지 않는 ‘생잉크’ 보드마커 시리즈를 출시하였고, 개당 1000원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만 300만 개를 팔아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림 19] 모나미사의 ‘생잉크’ 보드마커 [그림 20] 등록특허 제10-0562280호 ‘시그마플로’

시그마플로는 기존 제품에 비해 3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일정한 농도의 잉크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몸체에 투명한 아크릴판이 붙어 있어 잉크의 잔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미국 특허 제7,073,967호, 한국등록특허 제10-0562280호, 한국 등록특허 제10-0562281호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간단한 구성의 발명이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잉크 및 펜 구조를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주장하여 등록받음으로 인해 앞으로의 사업확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21] 다양한 형태의 생잉크 보드마커 ‘시그마플로’

### 1회를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받아봐야 소용없다.’ 는 탄식을 많이 한다. 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시장에 출시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특허가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닌 이상 ‘특허 → 돈’ 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결국, 시장에서 성공한 발명만이 자본을 창출하며, 창출된 자본에 의해 더 소비자친화적인 발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한 발명’ 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론과 전략을 수립하기보다, 시장에서 이미 성공한 발명들의 차별화된 가치요소를 분석하고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배워 나의 발명에 투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골드만삭스의 보고대로 2050년 세계 제2의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발명가들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발명을 많이 창출해야 한다. 지식재산강국을 만들어갈 발명가들의 성공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발명특허 2010. 2

# 우 리 은 행 사 건



## 손 지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수로  
 서울대학교 정밀기계공동연구소 연구원  
 40회 변리사시험 상표법수석합격  
 한국특허아카데미 상표법 전임교수  
 (현) 태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사례) 2002년에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상호와 CI를 변경하였다. 또한, ‘우리은행’이라는 문자상표를 ‘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른 은행에서 상기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됨을 이유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상기 등록서비스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과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상표법상 규정은 무엇인가?

## I. 대법원 판례<sup>1)</sup>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우리’와 ‘은행’이 결합된 서비스표인바,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

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등으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어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표시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우리’와 ‘은행’이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 II. 식별력이란?

상표법은 제6조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어떤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보호를 받기 위

해서는 그 표지를 통해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하며 식별력은 어떤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식별력은 상표마다 구체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심사 시에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심사의 신속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표법은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III.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들

#### 1. 보통명칭상표<sup>3)</sup>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보통명칭상표라 한다. 보통명칭(generic term)이란 “컴퓨터” “커피”와 같이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등을 말한다.<sup>4)</sup>

이러한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물건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보통명칭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처음부터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도 있지만 당초에는 상표였던 것이 그 상품이 너무나 유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소유자가 상표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보통명칭화한 것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스피린” 이고, 그 외에도 “쇼코파이” 및 “호도과자” 등이 있다.

#### 2. 관용상표<sup>5)</sup>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관용표장상표라 한다. 관용표장이란 청구에 있어서 “정종”, 구강 청량제에 있어서 “인단”과 같이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보통명칭상표와 차이점은 주체적 판단기준으로서, 보통명칭은 거래계나 일반 수요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대하여 관용표장은 동종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명칭을 말한다.

#### 3. 기술적 표장<sup>6)</sup>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표지를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한다.

기술적 표장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표법상 열거된 것이 외에도 일등급 우유, 명품 의류, 노란색 우유 등과 같이 상품의 등급, 품위, 색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며 그밖에 슬로건이나 광고설명적 어구 등 성질 표시적인 표장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7)</sup>

기술적 표장은 성격상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 거래상 누구나 사용해야 할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산지표시란 굴비에 대해 “영광”, 녹차에 대해 “보성”과 같이 상품이 그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경우는 물론 일반의 수요자 거래자가

1)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3301 판결

2)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35면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5)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6)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당해 상품이 그 지방에서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sup>8)</sup> 따라서 해당 상품이 현실로 생산 판매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그러한 인식도 주지 아니하는 지명은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산지표시인지의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품질표시란 런닝셔츠에 대해 “하이런닝”, 녹차에 대해 “생명물” 등과 같이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품질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재료표시란 삼푸에 대해 “케라틴”과 같이 당해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당해 상품의 주원료 또는 주요부품은 물론 보조원료 또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동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sup>9)</sup>

효능표시란 삼푸에 대해 “No More Tears”와 같이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물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해 상품의 성능은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표시된 성능의 유무를 불문한다.<sup>10)</sup>

용도표시란 축구화에 대해 “KICKERS”, 콜라에 대해 “DI ET COLA”와 같이 당해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지정상품의 수요계층 또는 수요자, 편의품, 필수품 등도 포함된다.

수량표시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의 단위,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형상표시라 함은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외형, 모양(무늬포함) 및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색채표시(립스틱에 대해 “RED”, 복사지에 대해

“WHITE”)도 형상표시에 해당한다.

가격표시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격과 가격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9900원”, “100\$”)를 의미한다.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의 표시라 함은 상품의 제조, 재배, 양식, 조립, 가공방법이나 push, pull, combination 등 사용방법을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기표시란 계절상품에 있어서 춘하추동의 표시, 부동산에 있어서 “FOUR SEASON” 등의 표시를 말한다.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sup>11)</sup>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국가명,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뿐 만 아니라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변화가 등의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까지 포함한다.

다만, 그 용어 자체가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는 것이며, “동아”, “중동”과 같이 지정학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도라 함은 세계지도(그 일부를 포함) 또는 국내외 국가의 지도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지도는 물론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5. 흔히 있는 명칭<sup>12)</sup>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포함한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지 여부의 판단은 전화번호부

7)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41면

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9)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45면

1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다386 판결

1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로 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같은 성이나 명칭을 가진 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sup>13)</sup> 외국인의 성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흔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이 아닌 한 흔한 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6. 간단하고 흔한 표장<sup>14)</sup>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십자가 모양 등과 도형이나,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sup>15)</sup>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구성자체로 특정인의 상품임을 식별시킬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설사 식별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예시적, 정형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표법 취지상 상표로서 보호할 수 없는 표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 IV.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

## 1.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도안화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흔히 있는 명칭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한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함은 상표의 외관은 물론 칭호 또는 관념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그 상

품의 보통명칭 등을 직감할 수 있는 표시를 말하며, 어의 상의 의미로서의 보통명칭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TRUCK LITE”의 경우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16)</sup>

또한, 기술적 문자 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 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문자 인식력을 압도한다는 뜻은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그 스펠링 및 의미를 직관적으로 깨닫지 못할 정도를 말한다.

## 2.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결합

보통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라도 그것이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후라보노킴”의 경우에는 “초코파이” 및 “후라보노킴”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나, “오리온” “롯데” 등이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상표법은 형식적으로는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구체적인 사용을 통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특정

1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13) 심사기준 제8조 제3항 해석참고자료

1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15)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1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인의 상표표지로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자타상품식별기능이 있고, 독점적용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17)</sup>

상표의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표표지로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거래상의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면 그 표지는 앞에서 본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와 적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장은 이미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승인된 셈이어서 일반 공중의 자유사용을 위해 방임하여 둘 공익상의 필요성도 상실된 셈이므로 상표로서의 실질적인 보호요건을 사후적으로 획득한 것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8)</sup>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함은 당해 상품의 유통망, 즉 관계 거래권에 속하는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의 대다수가 당해 표장을 특정인의 상표표지로 승인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정인이란 구체적인 출처가 아니라 이름의 존재로서의 추상적인 출처로서 족하다.

다만,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상표심사기준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상표는 일단 등록이 되면 그 효력이 우리나라 전역에 미치므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범위에 걸쳐 상표로서 인식될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V. 결론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

출원 시에 미리 구체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등록을 받을 당시에는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식별력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다만, 식별력의 유무와 정도는 상표의 객관적 구성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의 사용실적, 거래실정, 당해 상품과 서비스와의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동적, 상대적 개념이며 추상적, 객관적, 절대적으로 고정된 관념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어진 사례에서 등록서비스표인 '우리은행'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 회사', '우리 동네' 등과 같이 그 뒤에 오는 다른 명사를 수식하여 소유관계나 소속 기타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의미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고,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로서, 만일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단어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비중에 비추어 이를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고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은행 측에서는 자신의 '우리은행'의 표장이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표장이 아닌, 특정인의 은행업의 출처표지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여부결정시 혹은 심결시에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기와 같은 판단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발명특허 2010. 2

17) 상표법 제6조 제2항

18)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53면



### 공중 [법일반]

공중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함. 공중은 행정청에 의한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중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름. 공중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임. 이에 관하여는 공중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각종의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여권발급, 검인 등이 그 예임.

### 공중오인설 [상표]

스위스의 판례, 독일의 학설의 입장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상표권은 공중오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된다고 하는 이론. 즉, 공중에게 오인, 혼동이 생기게 할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여 침해여부를 가리는 이론.

### 공중영역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받지 못하는 발명, 상업 표장 등 제반 창작물의 지위나 상태.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 창작물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제할 수가 있게 됨.

### 공중에 기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모두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의 부분은 특허권자가 공중에 기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 사유 중 하나이다.

### 공존출원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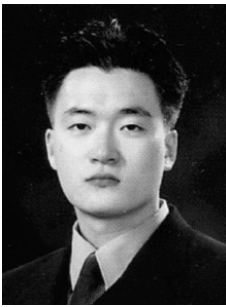
특허출원 후 그 공개 전에 제출된 동일 내용의 특허출원.(미국)

### 공존상표권 [상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자도 상표권자와 같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 전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영업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



#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터의 법적 지위



## 김웅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목 특허법인 근무

사례) 갑은 게임제작업자로서, 새로운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게임에 등장하는 마법사 캐릭터를 다양한 상품 및 콘텐츠 사업에 응용한 캐릭터 사업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다.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상기 마법사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와 관련된 거절이유 및 등록 후 법률관계를 검토하시오.

## I. 문제의 제기

1. 갑이 창작한 마법사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캐릭터 그 자체의 외관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 특정 물품을 전제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한다. 아울러, 캐릭터를 각종 특유디자인제도를 이용하여 보호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2. 관련 거절이유의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등에 관한 유사판단, 창작비용이성, 및 부등률사유를 검토한다.
3.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논외로 한다.

## II. 갑의 마법사 캐릭터디자인의 보호 방안

### 1. 디자인보호법의 보호객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즉,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은 물품에 화체되어 표현되고 물품 자체로서 독립적인 거

래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와 같은 추상적 모티브는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 (2) 현행법상 캐릭터를 디자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을 전제로 하여 그 물품의 외관에 표현하여 출원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안의 경우, 갑은 상기 마법사 캐릭터를 보호받기 위해 캐릭터 사업 마케팅에 관한 예상 사업 범위에서 가능한 다양한 물품(상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갑이 마법사 캐릭터를 특정 물품에 화체하여 출원하는 경우

- (1) 상술한 바와 같이,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에 의해 갑은 마법사 캐릭터를 형태적으로 이미지화하여 특정 물품에 표현한 후 출원할 것이 요구된다. 즉, 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하고, 마법사 캐릭터가 표현된 물품이 도시된 도면을 제출할 경우 캐릭터는 그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
- (2) 한편,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를 전제로 인정되므로, 상기 마법사 캐릭터가 표현된 물품이 상이하면 별개의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사안의 경우, 갑은 디자인등록 후 실시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당해 캐릭터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품을 대상으로 등록받아야 할 것이다.

## 3. 특유디자인제도를 활용하여 마법사 캐릭터를 보호받는 방안

- (1) 부분디자인제도의 활용 방안

1) 부분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부분의 형태를 표현한 디자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괄호) 원칙적으로 물품의 부분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물품의 일정 부분만의 모방 및 실시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 시행법부터 인정되었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특정 물품의 외관상 일부분을 차지하는 마법사 캐릭터를 특정하여(실선) 당해 물품을 전제로 하여 상기 마법사 캐릭터의 형태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 (2) 글자체디자인제도의 활용 방안

1)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하고,(법제2조제1호의2) 이는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고자 2005년 7월 1일 시행법부터 디자인보호법상 보호객체가 되었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상기 마법사 캐릭터를 활용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 표현하여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3) 동적디자인제도의 활용 방안

1) 동적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형태의 특이한 변화 상태에 창작의 요점이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는 디자인의 동작 내용의 창작도 보호가치가 인정되고, 출원인이 동작과정 중 각각의 상태마다 출원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심사실무상 인정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상기 마법사 캐릭터의 정적 상태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마법사 캐릭터의 독특한 움직임을 표현하여 동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4) 화상디자인제도의 활용 방안

1) 화상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2003년 7월 1일 시행 심사기준

에 의하면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한편, 2008년 1월 1일 시행 시행규칙에 의하면, 화상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무심사출원으로 취급되고, 도면 제출도 간소화되었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마법사 캐릭터를 아이콘 등의 화상디자인으로 변형하여 정보화기기 등의 표시부에 구현되는 상태로 등록받는 경우 정보화기기 등의 디스플레이부에 나타나는 캐릭터디자인의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5) 복수디자인등록제도의 활용 방안

1) 복수디자인제도라 함은 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해 1디자인 1출원주의에도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11조의 2) 이는 동일한 테마를 중심으로 유사한 형태가 다수 창작되는 디자인 창작의 경향에 따라 관련 디자인의 통일적 보호 및 출원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이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마법사 캐릭터를 20 이내의 다양한 무심사대상물품에 표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다수의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다.

(6)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의 활용 방안

1)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라 함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12조) 이는 산업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통합적 미감 또는 시스템디자인의 보호를 통해 거래사회의 실정에 호응하기 위함이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마법사 캐릭터를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86개의 물품에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형태로 표현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III. 캐릭터와 관련된 거절 이유 검토

1. 디자인의 정의(법제2조제1호) 및 공업상 이용 가능성(법 제5조제1항본문)

(1) 캐릭터 자체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 캐릭터 자체는 물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성립요건 흠결에 해당하여 2조1호에 저촉되어 5조1항본문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캐릭터의 도안이 물품에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한편, 출원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안의 경우, 마법사 캐릭터 도안이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상기 마법사 캐릭터 도안이 공업적 양산가능성을 구비한 물품에 표현되어 제품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규성, 선출원주의, 및 유사디자인 (법 제5조제1항각호, 제16조, 및 제7조)

(1) 신규성, 선출원주의, 및 유사디자인 여부 판단은 디자인간의 동일 또는 유사 판단이 요구된다. 즉,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판단시 공지 등이 된 디자인, 선출원주의 판단시 선출원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판단시 기본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상호 동일 또는 유사성의 인정 여부가 전제된다. 한편,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서만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 외관상 동일 또는 유사한 마법사 캐릭터라도 상이한 물품에 표현된 경우 상호 비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상기 마법사 캐릭터에 관한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이 아니며, 기본디자인의 유사디

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3. 창작비용이성(제5조제2항)

- (1) 출원 전에 당업자가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주지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 사안의 경우, 상기 마법사 캐릭터 도안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경우, 삼각형 등의 평면적 형상과 같은 주지형태로부터의 용이창작인 경우, 자연물 또는 유명한 저작물 등에 기초한 경우, 주지디자인에 기초한 용이창작인 경우, 또는 캐릭터 자체가 매우 유명한 형상, 또는 모양으로 인정되는 경우 창작성 위반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4. 부등록사유(법 제6조)

- (1) 출원디자인이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부등록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 사안의 경우, 마법사 캐릭터 도안이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IV. 등록 후 권리관계

### 1. 디자인권의 발생 및 침해여부(제41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독점한다. 캐릭터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경우 캐릭터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화체된 물품과의 관계에서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3자

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상이한 물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캐릭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2. 이용 및 저촉관계 여부(제45조)

캐릭터에 관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선원 권리와 관계에서 이용저촉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캐릭터에 관한 등록디자인이 선원 권리를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선원 권리의 보호범위와 중첩되는 경우에는 저촉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캐릭터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등은 선원 권리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야만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

## V. 사안의 해결

같은 마법사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물품을 전제로 출원해야 하며, 등록된 캐릭터디자인은 반드시 그 전제가 된 물품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캐릭터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창의적인 캐릭터디자인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해 캐릭터 컨셉(concept)의 보호 및 독자적인 보호객체화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특허 2010. 2

# ‘권리’로서의 지식재산권



**이 태 원** 주임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 들어가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한 조사관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이 있다. “특허라는 게 한마디로 돈 낭비다. 고작 20년이면 사라질 권리에 대고, 그나마도 무효소송이니, 특허 침해니 해가며 법정 소송으로 다투느라 돈들이고, 기업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킨다는 효과도 없고, 이런 걸 기업들은 전략이니 하고, 특허청이나 일부 정부기구들은 정책이라고 들먹이고 있다. 특허라는 허상의 권리에 국가가 돈을 들인다는 건 혈세낭비 아니냐.” 내 귀에 들어온 말을 굳이 세련된 표현으로 바꾸어 적지 않은 것은, 지식경제부의 정책과 업무를 조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많은 선진 국가들이 자국의 힘을 키우는 데에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었기에 더욱 근심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지식재산 강

국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있다면,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고통이 아닐까 싶다.

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기한의 제한이 따르고, 기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권리의 취득이란 것은 무엇이 되었든 제한된 자원이나 가치의 일부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효력이 있어서, 이해가 상충하는 이들과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설득이 밀바탕 되고, 무엇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오히려 설득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과제를 요청하고 지원해야 할 사람이 권리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먼저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권리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에 대해 짧으나마 논의를 해볼까 한다.

## ‘권리’로서의 특허

흔히 ‘특허’라고 짧게 말하고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특허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영문 상으로도 IP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학계나 많은 공식적인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꼬박꼬박 IPR이라고 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우리도 많이 의식이 변화되긴 했지만, 권리를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서구의 권리의식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특허권은 우리가 입에 배어 있는 것처럼 기술이나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특허 특허권은 재산권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권리가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민법이 규율하는 법원리에 가깝고, 그래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재산권과 같은 부수적인 권리가 따르고, 권리의 다툼에 있어서도 재산권과 유사한 형태의 소(訴)가 제기되는 것이다.<sup>1)</sup>

### 1. ‘권리’의 규율원칙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권리의 양상과 내용에 따라 다르다. 헌법이 인정한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으로부터, 민법이 세세히 규정한 재산권의 내용이 서로 다르듯이, 특허권 역시 그 취득의 방법은 여타의 재산권과 많은 차이가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참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미국에서 태어남으로써 국적이 자동 취득되어 얻게 되는 국적에 근거한 참정권과 복잡하고 어려운 이민절차나 귀화절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시민권에 근거한 참정권처럼 그 권리는 동일하나 취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규율하는 특허법을 별도로 두고, 그에 대한 행정적 권리운용의 전문가로 변리사라는 직을 창설한 것에서도 그 독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허권이란 것이 기존에 권리의 창설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정신이나 법원칙과 별개의 신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다. 특허법 역시 민법이 정한 재

산권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 특허권의 취득에 관한 행정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점에서는 기존의 법원칙과 법규의 종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을 단순히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규율하여, 변리사라는 특수전문가만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 2. 재산권으로서의 권리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산권의 원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권리로서의 특허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구별되는 점은 특허의 경우는 권리의 획득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서, 특허출원에서 등록이라는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권리 특히 재산권에 관한 민법상의 법원칙이나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비슷한 예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예로 들 수 있고, 특히 계약이나 거래를 통한 일반적인 권원이 아닌, 오랜 기간의 점유에 의한 권리의 획득이나 무주물에 대한 권리획득 등의 법리도 특허법의 독특한(아니, 독특해 보이는) 법적 구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우선 민법은 재산권을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법에 앞서는 원천적인 권리로 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욕구를 균형 있게 규율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사회계약론적인 사상이 법률에 녹아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권리는 그 획득을 위한 방법 역시 권리 자체가 가지는 성격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권리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과 제3자에 대한 파급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작용을 지속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건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 3. 권리의 취득 근거 : 권원

재산권의 경우는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를 기본으로 권리가 부여된다. 그리고 그 소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첫

1) 물론, 특허권은 토지나 건물과 같이 시세나 가액이 정해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소송가액의 산정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권리의 다툼에 관한 소송의 형태는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는 점유, 즉 그 물건을 소유자가 자신의 통제범위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점유 상태에 있으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서류 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에게 빌려 준 것이면, 빌려간 상대방과의 약속이나 계약의 문서를, 그 물건의 성격이 토지나 위험물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인 경우에는 소유나 행정기관 등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행정적인 문서를, 자동차나 선박과 같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물건이라면 등록관련 문서나 공증서류 등을 소유의 증거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권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 상대방 이외에도 불확정의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근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더욱이 그것이 상법상 혹은 상관습상 자주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면, 이러한 요건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정리해서 말하면, 권리는 권리의 획득에 대한 근거 즉, 권원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확대될 때마다 그 이해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사회 내의 모든 물건과 재화는 지속적으로 변동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은 없다. 소유권은 아무리 길어도, 소유자의 수명이상을 누릴 수 없으며, 거의 모든 권리가 계약상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할 수 없고, 상당한 수의 채권이나 청구권은 소위 제척기간이라는 주장의 기한을 갖게 되는 것이 한 사회의 법의 정신인 것이다.<sup>2)</sup>

#### 4. '권리'의 구현

환언하면, 지식재산권의 경우도 이 점에서는 동일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허란 것은 자신의 발명이나 기술을 권리로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재산권의 확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이 재산권을 확보하게 된 권원

이 계약인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상속이나 점유 혹은 무주물선점에 의한 것이 되면 사적자치보다는 행정법의 원리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처럼, 지식재산권도 출원과 등록의 행정적 절차가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형성적 기능을 하는 만큼, 권리의 획득에는 계약에 의한 재산권의 취득보다는 복잡한 권원의 형성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나 발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이 바로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에 있어서도 비록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등록에 이르는 제반 서류나 절차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앞서 불법거래된 사실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하자가 남는 문제가 따르는 것처럼, 특허의 경우도 비록 출원의 절차가 잘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발명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불법거래된 발명이자 기술'의 의심이 완전히 걸리지 않으면, 권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sup>3)</sup>

문제는 행정작용이 권리의 창설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은 특허권이 가지는 강점이자 단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무주물선점이나 점유에 의한 소유권의 인정과 같은 소지가 있어서, 실제 주인이 나타나면, 새로이 인정된 소유권은 말소가 되거나, 매매에 준하는 수준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특허권이 항상 발명자의 진정한 발명이자 기술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행정작용에 의해 창설된 권리이므로,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력의 차이가 권리의 안정성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특허 선진국들의 제도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특허법을 비교하여 보면, 이런 차이가 극명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권

2) 법적 안정성이란 것이 법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외관주의'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권리는 권리를 보유한 자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를 포함해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인 만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권리의 외양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지식재산권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3) 앞서 예로 들었던 시민권의 경우도, 시민권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결혼이나 불법이민 등의 시민권 취득의 하자가 발생하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한 것처럼, 행정적인 권원에 의한 것은 국가 정책상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리취득을 위한 절차와 증빙이 정형화되고 통일화되고 있는 반면에, 전산망이나 행정서류나 절차의 통일이 아직 미흡한 나라에서는 재산권의 권원을 행정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여전히 미흡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대한 권원의 입증방법이 유동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광주에서의 권리입증방식이 다르고, 북경에서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 ‘권리’의 세계적 패러다임

특허 선진국들은 권리의 취득을 세계적으로 상호인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를 취급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력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전자정부 수준의 행정력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기에, 출원서류의 통일이라든지 심사 방식의 통일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각국이 보유한 수많은 기술관련 논문과 입증자료들도 각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참조하고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해 나갈 것이다. 증권거래라든지 수많은 경제부문의 권리취득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지식재산의 분야

에서도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통일화되고 있다. 이제는 권리에 대한 의식도 세계화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특허권의 확보에만 치중하여 기술의 확보라는 담보적 가치에만 치중하여, 특허의 실시권을 활용한 라이선싱 전략 등의 용익적 측면에 눈뜨지 못한 상황이라면, 권리의 취득에 앞서 권리의 행사범위 - 국내에 한정할 것인가? 국외에는 어느 나라까지를 행사범위로 할 것인가? 혹은 방어용 출원인가? 공격차원의 출원인가? 등 - 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할 때인 것이다.

너무 비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특허의 각축장에서 명확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소위 Win-Win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국과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몰매장하는 열강들의 손아귀에 모든 권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도축장이 될지 모른다.

이왕 비정한 표현을 한 김에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해서 달리 말하면, 이 도축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칼을 쥐는 것이며, 그것도 녹슬고 무딘 칼이 아니라 어떤 부위든 베어낼 수 있는 확실한 칼을 쥐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특허청이 ‘한국에서 특허면, 세계에서 특허’를 표방하는 것은 바로 이를 순화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연재

##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하버 [Haber, Fritz, 1868. 12. 9 ~ 1934. 1. 29]



독일의 화학자 하버는 1911년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물리화학연구소 창립과 함께 초대 소장 겸 베를린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였다. 기체반응의 열역학(熱力學)과 전기화학에 관하여 주요한 업적이 있으며, 1904년경부터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08

년에는 R.L.로시놀과 공동으로 그 공업화를 연구, C.보슈의 협력을 얻어 성공하였고(하버-보슈법), 1918년 보슈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사바티에 [Sabatier, Paul, 1854. 11. 5 ~ 1941. 8. 14]



프랑스의 화학자 사바티에는 1897년 J.B.상드랑과 함께 환원니켈을 접촉제로 하고 벤젠에 수소를 첨가하여 쉽게 시클로hex산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환원금속을 써서 유기화합물 전반의 접촉환원을 계통적으로 연구하여 유기화학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이 방법으로 마침내 경화유공업은 확고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세한 금속의 존재에 있어서 유기화합물의 수소화법'의 업적으로 V.그리냐르와 공동으로 1912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자료제공 화상 아프리카에(<http://blog.daum.net/philook>)



IP Report

IP Information

IP Column



발명강좌	쓸수록 좋아지는 머리	44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9
발명칼럼I	기록과 수집의 진가	50
발명 365		55
발명칼럼II		
	입학사정관제도에서 발명교육은 창의성 평가 기준이 된다	56
해피 CEO 인터뷰		
	플로우네트웍(주) 김정일 대표이사	60
지식재산강의	상표법, 특허법	62

# 쓸수록 좋아지는 머리



## 박혁구

(주)에리트 회장  
 (사)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발명유공)  
 발명도서 '생활 속의 발명' 외 2권



### 계속 쓰면 치매도 예방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화가 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 중 하나가 치매노인의 문제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오줌·똥을 싸서 벽에 바르고, 철모르는 어린이들처럼 손으로 주무르는 노인들의 모습이 결코 아름다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보다 못해 관광지에 버리거나,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자식들이 서로 다투면서 갈등을 겪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급기야 치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전문병원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나이를 먹어 가는 사람들에게겐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머리를 계속해서 쓰는 일이다.

무언가를 외우고, 끊임없이 사용해서 머리가 녹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긴 자동차나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얼마 못 가서 녹이 슬고, 결국 못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머리는 어느 정도의 기능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 쓰지 않으면 녹스는 머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대의 우리는 각종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첨단 과학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사실 우리 인간의 육체적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물고기처럼 물 속에서 살거나,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다.

밀폐된 공간에서 조금만 있어도 호흡을 할 수 없고, 갈비뼈 하나만 부러져도 움직이기 힘든 나약한 육체를 가진 것이 곧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활동은 시공을 초월하며 한계가 없

고, 쓸수록 좋아지는 것이 머리다.

인간의 두뇌는 인체 중에서 가장 빨리 발달하는 부분이다.

머리의 무게는 태어난 후, 6개월이 되면 출생 시 무게의 2배, 첫돌이 지나면 3배 정도로 증가하는데 이는 성인의 대뇌무게와 비교했을 때 67%에 해당된다.

뇌는 발달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2세에 성인의 대뇌 무게의 75%에 도달하고, 5세에 성인의 크기에 도달한다.

지능(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모호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심리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능력
- 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는 능력
- ③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개인의 지능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고,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인지능력은 아동기를 전후하여 모두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가정과 사회의 관심 속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신체, 운동, 감각, 지각, 학습, 인지, 언어발달과 함께 사회적·도덕적·정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고능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교육을 통해 발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적절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지·사고 능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쓰지 않는 머리는 녹슬고 만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발견된 늑대소녀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다.

인도의 켈커타 부근에서 두 늑대소녀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늑대에 의해 길러졌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었고, 행동 또한 늑대와 흡사했다.

그들 중 8세의 카마라는 인간에게 발견된 뒤 약 9년을 더 살았다. 그 동안 카마라는 인간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웠으나 때때로 늑대의 습성으로 돌아가 사고능력의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처럼 인간의 머리는 기계와 비슷하여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주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쓰지 않은 채 방치되면 녹슬고 만다.

## 두뇌를 훈련하는 방법

그렇다고 무턱대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머리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듯이 두뇌를 훈련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도 방법이 있다.

우선 사물을 분석적으로 보고, 사용할 용도를 생각해 보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 개의 못이나 볼펜, 종이 한 장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자. 물체는 각각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붉은 벽돌 한 장을 놓고 살펴보자.

‘벽돌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될 수 있는 한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생각해 보자. 다소 엉뚱하다 싶어도 상관없다. 사실 모든 아이디어는 엉뚱한 착상에서부터 시작된다.

벽돌을 관찰한 결과 얻을 수 있는 특성은 ‘단단하다’, ‘무겁다’, ‘붉은 빛깔을 띤다’, ‘입방체이다’, ‘으깨면 가루가 된다’, ‘촉감이 거칠다’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많겠지만 공통적으로 집약한다면 이런 특질을 가졌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생각의 범위가 좁혀지는 셈이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이 특성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단단한 속성으로는 호도를 깔 수도 있고, 망치 대용 혹은 흥기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겁다는 속성을 이용하여 저울의 추로 쓰거나 배추 등을 절일 때 누름돌, 혹은 포환던지기 등의 연습용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입방체의 모양, 거친 촉감 등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학습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으깨면 가루가 되기도 하고, 그 속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대로 깎아 조각품을 만들 수도 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쓰일 곳은 무궁무진하다. 어린이용 의자, 소꿉놀이용 밥상, 문 받침대, 장난감 블록, 책꽂이 대용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받침도 될 수 있다.

위대한 발명품들 중 여러 가지가 모두 이러한 사고과정

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과연 그럴까?

요즘 백화점 등에 가면 흡사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사람의 은밀한 부위만을 살짝 가릴 삼각팬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진열대에 많이 진열되어 있다.

과연 누구의 발명품일까? 얼른 생각으로 활동적이고 젊은 디자이너를 떠올리기 쉽지만 어리광을 부리는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한가롭게 지내는 50대 중반의 할머니이다.

발명가에 대하여 유난히 말이 많지만 맨 먼저 특허 등록을 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일본의 사쿠라이 여사이다.

사쿠라이 할머니는 일명 마이크로 팬티로 불렸던 ‘삼각팬티’, 껌맨 곳이 줄어든 ‘유니크 팬티’, 스타킹을 겸한 ‘타이즈 팬티’, 아기 기저귀 커버를 겸한 ‘유아용 아토편티’ 등 팬티 시리즈만으로 돈방석에 올라앉은 특별한 발명가이다.

그녀에게는 젊은 시절 의류 소매상을 한 것이 옷과 관련된 인연의 전부였다.

삼각팬티는 지극한 손자사랑의 산물이다. 나이가 들어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던 사쿠라이 여사는 어느 여름 날, 아이들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긴 속옷에 몹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저런, 찌뜨. 더운데…….”

당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바지에 가까운 속옷밖에 없었기 때문에 겹옷을 입기에도 불편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었다.

‘속옷의 구실은 단지 가리는 것일 뿐, 쓸데없는 부분까지 길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여기에 미친 할머니는 문제를 의외로 간단명료하게 풀어 나갔다.

테트론이라는 천으로 만든 흰 자루에 가위를 대고 싹둑 잘랐다.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봉제를 한 것이 삼각팬티가 된 것이다.

“가볍고 편리한데요. 아주 산뜻해!”

너도나도 삼각팬티로 갈아입는 팬티 교체 신드롬을 타고 대히트했다. 때는 1951년의 일이었다.

“발명이란 것도 별거 아니네. 내친 김에 몇 가지 더 해

볼까?”

곧바로 나온 팬티 시리즈 제2탄이 유니크 팬티였다. 그때까지는 허리와 엉덩이 곡선이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엉덩이 부분에 옷감을 덧씌우곤 했다.

그런데 사쿠라이 여사는 이것을 아예 생략해 버렸다. 착용감도 뛰어났고, 이어서 껌맨 곳이 터질 염려도 없었다. 이 또한 히트작이었다. 때는 1954년.

이어서 처음부터 통으로 짠 천을 이용하여 만든 타이즈 팬티. 삼각팬티의 원리를 응용한 유아용 아토편티가 속속 발명되었다. 이것들은 일본 굴지의 의류업체인 도요레이온 사에 의하여 대량생산되었고, 곧 전 세계를 휩쓸었다.

여사에게는 연간 30만 엔의 로열티와 기술고문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

등반대의 필수품으로 손꼽히는 물통과 나침반을 하나로 만들어 크게 히트한 발명품이 있다.

‘연필+지우개’ 라는 하이만의 발명품과 같은 이 물통도 세계적인 발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야마시타는 등반 도중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나침반이 어디 있지?’

그는 배낭을 뒤져 나침반을 찾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침반을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

‘이거 큰일이네!’

주위는 어두워지고, 그가 가진 것은 허리에 찬 물통 하나 전부였다. 그는 가까스로 구출되었지만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

‘앞으로도 나처럼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해. 잊어먹기 일쑤고, 여행할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에 붙인다면?’

그는 물통 뚜껑에 나침반을 붙여 놓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를 발명가로 만들어 놓았다.

한 평범한 주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쓴 모자가 바람에 날려 자꾸만 벗겨졌다.

“이런, 또 야?”

주부는 모자를 눌러 씌워주며 몹시 안타까웠다.

‘바람이 불어도 벗겨지지 않는 모자는 없을까?’

그와 동시에 그녀는 모자에 신축성 고무 밴드를 부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직접 모자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이 상품을 들고 여러 회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한결같이 절망적인 대답이었다.

“그 정도의 아이디어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집에서 살림이나 잘 하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상품의 특허출원을 신청한 후, ‘바람에 날리지 않는 모자’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회사에서 뭉치돈을 들고 찾아와 공동생산을 제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기업으로부터 3년간 임대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현재는 국내외 업체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 평범한 주부의 이름은 정용진이고, ‘포미나 모자’를 개발한 주인공이다.

이만하면 발명에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 머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국의 사진 기술자인 이스트만이 저렴하고 간편한 카메라를 발명했다. 그는 이 카메라의 이름을 짓기 위해 며칠동안 고민했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느낌을 주는 알파벳은 ‘K’야!”

“그래? 우리 어머니 이름도 K로 시작하는데…….”

그는 새로 만든 카메라 앞과 끝을 K로 고정한 후, 여러 알파벳을 중간에 끼워 넣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강력하고 부르기 쉬운 단어가 ‘코닥’이었다. 이 단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값싼 카메라를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적인 상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

발명품은 머리로 생각하여 손으로 만든다. 그리고 사업은 더더욱 머리로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것

처럼 많은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것들이 모두 발명의 재산이 된다.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다섯 살 때 겨우 입을 열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렸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다. 소년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환상에 사로잡힌 저능아’라는 평가를 받고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석학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다.

또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나요?’ 하고 따졌다.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 알을 품기도 했다. 담임선생님은 소년을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지목하였고, 열세 살 때 퇴학처분을 받았다. 그 소년이 바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다.

또 한 소년의 학교성적은 항상 꼴찌였다. 소년은 예술 학교를 세 번이나 지원했지만 모두 낙방했다. 낙방의 이유는 ‘교육 불능’이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통탄의 한숨을 쉬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다.

문제아, 저능아, 바보들에 의하여 세계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다. 그러므로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어느 파티에서 한 귀부인이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며 울상을 지었다.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손수건에 얼룩무늬가 생겨 이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존 러스킨이 귀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간만 제게 빌려주십시오.”

미술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던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자국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 넣어 부인에게 돌려주었다.

손수건은 이전의 것보다 오히려 훨씬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였다.

“어머나, 너무 아름다워요!”

러스킨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감격해하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잉크자국이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 넣는 동기가 되

있습니다. 이전의 손수건보다 훨씬 아름답지요”

발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머리를 쓰는 사람에게 붙들리면 새롭게 훌륭한 걸작품이 되고, 쓸만한 물건이라도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잡히면 쓰레기로 둔갑하거나 더 못쓰게 될 뿐이다.

롤러스케이트는 스케이트에 바퀴를 단 아이디어에서 탄생되었고, 이것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백만 달러의 특허료를 받았다.

단지 쇠못이 싫어서 나무못을 만든 사람은 한 해에 50만 달러의 큰돈을 벌었다. 그 외에도 구두에 박는 징 하나

로 거부가 된 구둑방 주인도 있고, 설탕봉지에 구멍 하나를 뚫어 백만 달러를 번 가난한 선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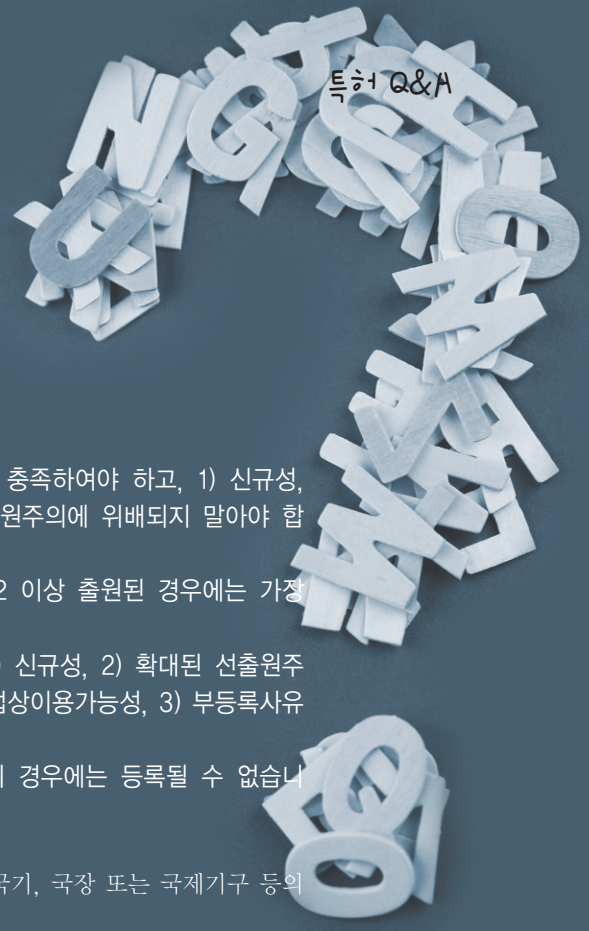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버릇을 습관화하자. 쓸수록 더 좋아지는 머리는 한없는 보물창고와 같고, 요술램프와도 같다.

창고를 열어 보물을 갖고, 요술램프에 소원을 빌어 보라. 미래가 찬란하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지혜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발명특허 2010, 2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

-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1) 신규성, 2)공업상 이용가능성, 3)창작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iv)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조)
-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1) 신규성, 2) 확대된 선출원주의, 3)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1) 성립요건, 2) 공업상이용가능성, 3)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

가.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다.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 i)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 ii)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마.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록과 수집의 진가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사무총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한국학교발명협회 및 한국스카우트연맹 편집위원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발명 강사  
 세계최다발명도서저술인(104권)

채소나 고기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자마자 신선한 냉장고에 보관하듯이 생각도 건지자마자 바로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많은 재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성공에 다가갈 확률이 높다. 사금을 채취하려면 많은 모래를 걸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모래를 거르는가에 채취하는 사금의 양이 달려 있지 않은가.

### 에디슨의 성공비결도 발명노트

식품 영양학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식품은 신선한 식품이라고 조언한다.

제철에 갓 딴 과일이 제일 맛있고, 영양가가 높다. 채소도 밭에서 막 가져온 싱싱한 것을 먹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식품은 시들해지고, 갖가지 세균이 생겨난다. 맛이 없어질 뿐 아니라 영양소도 많이 파괴된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면 퇴색하고 처음의 생생한 생동감이 떨어진다. 점차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아이디어와 함께 떠올랐던 갖가지 생각들은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나중에는 화석처럼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는데, 이때는 이미 가치를 잃은 후다.

간신히 아이디어의 뼈대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생각을 잊으면 그만큼 가치도 떨어진다. 갓 잡은 생선이 가장 비싼 것처럼 아이디어도 갓 잡은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선한 생각을 잡아둘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에디슨이 최고의 발명가로 올라선 비결도 바로 그가 애지중지하게 여긴 발명노트에 있다고 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엄청난 기록 광이었다고 증언한다.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적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작은 수첩을 분신처럼 늘 가지고 다녔고, 메모지가 없을 때는 식당 냅킨이나 휴지조각에도 생각을 그때그때 옮겨 적었다. 덕분에 그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괴짜'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그의 사후에 유물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책장 빼곡히 꽂혀있는 발명노트를 보고 모두 놀랐다고 한다. 노트 안에는 여러 가지 발명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 작은 메모지들이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그가 평소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메모한 종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노트에 붙여둔 것이었다.

또 아이디어 뿐 아니라 연구의 진행사항도 일일이 기록해두었다. 실패한 연구사례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적고 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중에 다시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온 것이 분명하다. 그야말로 완벽한 발명 교과서라는 게 발명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좀 있다가 집에 가서 찬찬히 다시 생각해야지' 하면서 머리 속에 다 집해둔다. 잊지 않겠다고 되새긴다. 하지만 생각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일단 떠오른 이후에는 급격하게 부패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떠오른 당시에는 펄떡펄떡 살아 숨쉬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와 흥분에 떨기 시작하지만 불과 10분이 못되어 서서히 감흥은 잊혀지고 점점 생명력이 떨어진다.

이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도 생생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영영 남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때그때 기록해두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소용이 닿는다. 생각의 창고를 만들어두는 셈이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유명한 3M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1인

당 한 권의 아이디어 공책을 가지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도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버리지 말고, 아이디어 공책에 기록했다가 회의시간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 3M은 이 아이디어를 꼼꼼히 검토하고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3M만의 다양한 상품이 모두 이 아이디어 공책에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회사의 경쟁력이 직원 공책의 더럽기에 비례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발명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맡에 늘 작은 수첩과 볼펜을 챙겨둔다고 한다. 꿈에서 얻은 아이디어조차도 기록하겠다는 심산이다.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본 것들을 적는다니 발명가들의 기록습관은 도저히 못 말릴 정도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는가? 그가 남긴 수많은 발명메모를 통해서이다. 천재성이 번뜩이는 그림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그의 발명노트는 많은 발명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를 털끝까지 세세히 남길 수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그저 메모지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소형 녹음기에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무선 전송 기 등등 너무나 많은 기기들이 있다.

일일이 글자로 남기는 것이 어렵다면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글은 생각을 남기는 도중에 어휘의 한계 때문에 그내용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 본래 생각과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떠오른 생각을 바로바로 말로 읊어 둔다면 한 가지도 잃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 특히 녹음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록이 가능하므로, 아주 쓸모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이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을 가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칫 빠뜨릴 수 있는 안건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치밀함이 성공의 비결일 것이다.

인기가수인 신 모 씨도 운전 중에 떠오른 악상을 그대로 녹음기에 흥얼거려 뒀다가 작곡에 활용한다고 한다. 갑자기 떠오른 악상은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녹음해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오랫동안 좋은 가수이자 작곡가로 인기를 끌 수 있

있던 것도 바로 기록하는 습관 때문이지 않을까.

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형상이나 현상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색을 표현하는 것도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땐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가방 안에 늘 작은 카메라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패턴을 보면 습관적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에는 작고 가벼운 디지털 카메라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그때그때 영상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둔다면 언제든지 생생한 사진 자료를 볼 수 있다.

컴퓨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컴퓨터는 종이와 달리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글자가 퇴색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정보를 잘 정리해두면 언제든지 원하는 자료를 몇 개의 단추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아주 요긴하다.

그러나 이런 첨단기기가 없더라도 작은 수첩과 볼펜만 있어도 만사형통이다.

사진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스케치도 하고, 아이디어의 꼬나풀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 몇 개라도 적어둔다면 그것으로 좋다. 그것만으로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아이디어를 다시 잡아올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메모를 다시 정리해두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록하는 것만 중요시 여긴다면 말짱 헛일이다. 수첩을 다시 뒤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물론 작은 종이쪽지 등에 급하게 남긴 메모는 다시 공책에 옮겨 분실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은 수첩과 필기도구를 늘 지니고 다니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자. 모든 기록은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잡아두자. 예로부터 유능한 사냥꾼은 짐승을 다치지 않고 사로잡는 것을 제일로 쳤다.

아이디어 사냥꾼임을 자처한다면, 내가 잡은 아이디어가 상하지 않게 바로 생포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 1%의 아이디어와 99%의 재료 수집

아마추어 발명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가 순간적인 번뜩임이 발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개되는 발명일화의 대부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힌트를 발명하거나,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와 성공한 경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빗어지는 착각인 것 같다.

물론 순간적인 번뜩임을 발명으로 승화시켜 성공을 거머쥔 사례는 많다. 때문에 발명이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발명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많은 발명일화는 오랜 시간동안 끈질기게 추적하고 싸운 끝에 얻은 결과물이다.

많은 자료를 모으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얻은 성공들. 때문에 발명사가 밝게 빛나는 것이다.

유명한 발명가 중에는 미려스러운 정도로 많은 재료를 모으고, 같은 일을 평생 동안 반복한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는 수집가보다 더 많은 물건을 모으고 실험을 반복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장 대중에게 잘 알려진 말인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다' 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해본 말이 아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성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놀라울 뿐이다.

에디슨이 말하는 99%의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광적인 재료 수집과 직접적 반복되는 실험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발명왕은 1%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99%의 재료 수집으로 만들어진다' 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사실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한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사실 그가 전구를 발명하면서 쏟아부은 열정을 생각하면, 그가 왜 발명왕으로 불리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가장 고충을 겪었던 것은 필라멘트의 소재를 찾는 일이었다. 필라멘트는 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소재였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발명의 70%는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적당한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수집한 재료는

무려 1만종에 달한다. 금속재료만도 6천종, 동물성 재료 2천종, 식물성 재료 2천종 등이다. 이 중에는 동물의 털, 새의 깃털, 대나무의 속살,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의 줄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필라멘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죄다 모은 것이다. 오죽하면 그의 실험실을 본 사람이 ‘박물관’이라며 혀를 내둘렀을까.

그는 이 재료들을 모두 일일이 실험을 해서 다른 재료와 비교하기를 반복했다. 적어도 1만 번의 실험을 한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재료를 시험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내가 찾지 못한 것 중에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쓰고 있는 재료가 어찌면 120번째로 적합한 재료에 불과할지도 모르잖아. 최고의 재료를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그야말로 발명가다운 대답이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1만 가지 재료를 모으고 1만 번의 실험을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그는 1만개의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금속재료를 찾아냈고, 인류에게 전기불이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음료수병의 마개로 쓰이는 왕관 병마개도 수집의 결과다.

왕관병마개는 맥주나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수병에 쓰이는 금속 마개.

그 모양이 왕관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보통 ‘왕관병마개’라고 부른다.

왕관병마개를 세상에 선보인 발명가는 페인터. 언뜻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이 병마개도 엄청난 재료수집과 연구의 산물이다. 페인터가 새로운 병마개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전 세계를 뒤져 수만 개의 병마개를 모으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당시 탄산이 들어간 새로운 음료가 막 개발한 때라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병마개가 필요했다. 탄산음료는 마개로 완전히 봉하지 않으면 가스가 새버려 완전히 맛을 망쳐 버리기 때문에 성능 좋은 마개가 생명이었다. 그러나 성능은 좋되 가격과 제조방법은 간단해야 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마개라고 해도 가격이 비싸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음료수 회사에서 현상금을 걸고, 병뚜껑의 디자인을 공모했을 때, 다른 발명가들은 책상에 앉아 병뚜껑을 디자인했다. 그들은 기존의 병마개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나 페인터는 전국을 돌며 병마개 수집에 나섰다. 기존 병마개의 장단점을 모르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어찌면 기존 병마개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수소문해서 수집한 병마개를 손수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골몰했다. 그가 모은 병마개는 무려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일까? 그는 얼마 후, 병의 입구에 단단히 아물리는 독특한 모양의 병마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왕관병마개다.

그의 철저한 분석 덕분에 이 왕관병마개는 지금도 유리병을 사용하는 모든 탄산 음료에 적용될 정도로 장수를 누리고 있다. 그만큼 깊이가 깊은 발명인 것이다.

또 식물 품종 개량의 아버지로 불리는 버어뱅크도 못 말리는 수집광이었다. 그가 오랜 시간동안 매달린 일은 새로운 딸기 품종을 개발하는 것.

그는 많은 품종의 딸기를 일일이 교배해, 보다 크고 육질이 좋은 품종을 만들려 했다. 그가 이 작업에 동원한 딸기 품종은 무려 80만 5천 종에 달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 1천 단위만 넘어가도 정신이 혼미할 지경인데, 1만 종도 아닌 80만 종이라니.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발명가가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지도 모르겠다.

사실 일반 사람이라면 도중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작업을 멈추고 성공을 발표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수집한 자료를 모두 직접 다뤄보고, 끝까지 더 좋은 결과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다.

에디슨의 말대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어찌면 이런 점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수집의 양에 비례해 그들의 업적도 놀라운 것이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명품의 수명이 긴 것인지도 모른다. 대개 발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부분이 침식되거나 바뀌기 마련이다. 그러나 앞서 말

한 이런 제품들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에디슨의 백열전구는 지금도 그때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왕관병마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사랑받는 물건이다. 버어뱅크의 딸기는 말할 것도 없다.

깊이 판 우물은 가뭄에도 쉽게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들의 발명품도 든든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리라.

국제사회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그 나라가 가진 엄청난 인적자원 때문이다.

우스개 소리로 100원짜리 볼펜을 만들어 팔아도 중국은 1천억 원 이익을 쉽게 올릴 수 있다고 했다. 13억이 넘는 인

구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위력을 나타낸 말이다. 남북한 인구를 모두 합쳐야 겨우 7천만이 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만큼 '양' 이 갖는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아이디어도 이와 마찬가지다. 많은 양의 재료를 수집할 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료를 모으자 수집광의 심정으로 가능한 많은 것들을 모아보자. 나의 힘이자 경쟁력이다.

발명특허 2010. 2



## INVENTION

3

6

5

## 전동기

전동기는 모든 기계의 심장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사실 자석의 특이한 성질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동기의 발명가는 미국의 토머스 데븐포트이다. 왜 그는 전동기의 발명가가 되었을까?

1831년 뉴욕에 있는 펜필드 철공소를 방문한 데븐포트는 거대한 전자석이 철을 빨고 분리하는 것을 보며 감탄사를 연 발하였다. 당시에는 전자석이 대중화되지 않아 일반인이 전자석의 쓰임새를 아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전자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갖가지로 실험하던 중 자석 안에 전자석을 놓으면 끊임없이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공리 끝에 전자석에 축을 달고 그 끝에 바퀴를 달아 보았다. 바퀴는 신나게 돌아갔다. 전자석을 이렇듯 이용해 만든 것이 전동기다.

## 전등부착 드라이버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찾아내 성공한 발명품이 있다. 일본 나가모리 전기회사가 만들어낸 전등부착 드라이버이다.

각종 드라이버를 생산, 판매하는 나가모리 회사의 연구팀은 매상이 날로 줄어들자 새로운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이들은 먼저 시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 드라이버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기계 속의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박혀 있는 나사못을 풀거나 조이는 데 따른 용도였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 기술자들은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춰가며 불편하게 일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연구팀은 드라이버 자루를 투명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그 안에 전지와 꼬마전구를 넣은 다음 자루 끝을 렌즈형으로 만들어 빛이 드라이버 끝에 집중 투사되도록 고안하였다.

## 전자레인지

여러 분야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음식의 조리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불 없이 음식을 가열하여 조리한다는 것은 50여 년 전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레인지가 보편화되어 웬만한 집에서는 어린이도 곧잘 사용한다. 이렇게 조리 방법의 혁신을 가져온 사람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퍼시 스텐서이다.

스텐서는 레이턴사에 입사하여 20년이 지나서야 정식 기술자가 되어 전자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열심히 일한 후 주머니에 넣어 둔 사탕을 먹으려다 깜짝 놀랐다. 주위의 열은 커녕 쌀쌀한 날씨였는데 사탕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이런 현상에 자신이 만드는 전자관에서 극초고주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 실험에 착수하여 전자레인지를 발명하게 되었다.

# 입학사정관제도에서 발명교육은 창의성 평가 기준이 된다



강충인  
 발명칼럼리스트  
 TQ창의력교육개발원장  
 직무발명 전문위원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겸임교수



**요** 즈음 입학사정관제도로 교육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방황하고 있기도 하다. 수년 전부터 미국의 명문대학 입학담당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자기 대학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가고 있다. 왜, 한국이 실시하고자 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세계적으로 학생선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입학사정관제도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선발방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대학 경쟁시대에 대학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시장에서 탈피하여 공교육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특성화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뽑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 창의적 발명교육은 입학사정관의 평가 기준이 된다

입학사정관제도의 기준에는 창의성, 도전성을 통한 미래적 인재 평가와 사회성 발달을 통한 협동성, 리더십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육성하는 교육방법으로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창작을 통해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창의성, 도전성, 사회성, 협동성, 리더십 등을 교육하게 되는데 창의적 발명교육은 사물이나 사건을 관찰하는 방법, 관찰을 통해 대화하는 방법, 대화를 통해 토론하는 방법, 토론을 통해 발표하는 방법 등을 논리적으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올바른 발명교육은 사정관의 기준이 된다.

창의성교육은 과학이나 수학을 통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키우는 관찰교육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 이러한 자료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기법을 교육하게 되고 다수의 학생들이 발명을 위한 문제해결을 토론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브레인 스토밍기법을 훈련하게 되고 이러한 자료와 발명의 결과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기법을 훈련하기 때문에 창의적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발명교육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창의적 발명교육은 물건을 만드는 공작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정보, 경험을 가진 레오나르도다빈치, 아인슈타인, 에디슨 등의 발명적 사고를 키우는 창의성 교육이다.

### 발명교육은 물건을 만드는 교육만이 아니라 창의성 체험교육이다

창작이란 무조건 만들어 내는 손재주만이 아니라 레오나르도다빈치 처럼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과학, 수학, 언어, 사회, 미술, 공예, 인체공학 등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적 사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창의적사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학교이고, 학교는 기업이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디지털경쟁시대에서 국제적 대학으로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학특성을 만들게 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 다양한 입시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입학사정관 제도가 창의적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안이 되고 있다.

###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이나 사회가 만들고 교육이 기업의 경쟁력을 만든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다. 대통령도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영입이 필요하면 때와 장소, 대상에 차별

하지 않고 영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지식정보교육보다 경험적 교육이 필요하며 발명교육은 경험을 교육시키는 창의적 사고 교육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시키게 된다.

UAE 원전 수주에서 한국에 고배를 마신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가 경제면에 “한국,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호랑이로 떠올라”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의 원전 산업을 지적했다. GE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으로 50년 전 원전기술을 배웠던 한국이 순수 한국의 원전기술을 개발한지 30여년 만에 원전 기술을 지원했던 GE와 경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인의 창의적 사고다.

세계는 유기적인 관계로 독립적 국가보다는 통합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것을 국제관계라 한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것이 창의적 사고다. 발명교육은 한사람의 아이디어를 다수의 아이디어로 재창출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한 번에 상품이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 예상하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대학정원의 대부분을 수능에 의한 정시방법에서 입학사정관시스템에 의한 학생선발로 대학의 차별화에 적합한 학생을 뽑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학의 차별화전략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똑같은 조건의 대학이미지로 경쟁한다면 위치나 지역적 환경, 전통적 조건에 유리한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학생을 모집하기 어렵게 되고 조건에 의하여 특정학교로 몰리는 현상은 대학의 정체성을 만들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함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창출하지 못한다. 결국 학생은 배출하지만 대학의 경쟁력이 없어 장기적인 생존에 문제점을 만들기 때문에 대학의 차별성 전략은 모든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다.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암기력과 주입식의 학생선발에서 창의적 능력을 가진 학생선발로 대학의 차별화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이 대학특성을 키우기 위한 학생선발 방

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쟁력창출은 남과 다른 생각과 남과 다른 행동을 가진 창의적인 학생의 선발과 육성을 키우는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에서 나온다.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발명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다. 발명가를 키우는 교육에서 발명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바꾸면 다양한 창의력에 의한 능력이나 기술, 가치를 인정받게 만든다. 60,000여 가지 직종의 경쟁력을 창출시키는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의 창의력을 키우기 때문이다.

### 발명교육을 발명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명교육은 발명가를 키우는 교육으로 알고 있다. 발명은 모든 분야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의료기술도 발명에 의한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상품개발도 발명기술에 의하여 경쟁력을 인정받는다.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생활환경의 모든 것이 발명에 의해 경쟁력을 창출하는 시대이지만 발명은 발명가만이 하는 특정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발명교육을 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발명교육을 발명가를 키우는 교육으로 제한한다면 발명가 교육이 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발명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교육으로 제한받게 되지만 발명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으로 확대한다면 다양한 교육에서 발명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으로 확산된다. 발명적 사고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창의적 사고로 표현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모든 교과과목에서 강조되는 단어다. 창의과학, 창의수학, 창의언어, 창의사회, 창의예술 등으로 모든 교과목은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듯이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방법으로 발명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은 높은 효과가 있다. 30여 년간 학생들의 창의성을 교육하고 20여 년간 기업의 사원교육이나 공무원교육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육이 재미가 있으면 교육생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경험이다.

재미있는 교육은 웃다가 끝나는 교육이 아니다. 웃다가

끝나는 교육이라면 코미디 한편을 보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이다. 모든 교육이 웃다가 끝난다면 교육의 결과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발명교육은 흥미와 재미를 키우는 창의성 교육이다.

요즘은 학교나 기업체, 공무원 교육현장에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교육이란 교육을 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키우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습득시키는 방법으로 재미있고 흥미있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발명교육은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재미와 흥미를 눈으로 보고 만들어 가는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호기심과 의문점을 재미있게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대학이 찾고 있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대학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직무발명제도와 발명교육의 오해

기업강의를 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하면 일반적으로 사원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전국 모든 기업에서 경험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자신은 발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발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직무발명을 강조하지 않고 직무발명의 성공사례제시를 통해 누구나 직무발명을 하고 있다는 사례교육으로 직무발명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의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발명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바꿔주는 교육이다. 직무발명은 직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직무발명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것은 발명교육의 잘못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본다. 발명은 발명품을 만드는 공작교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손재주가 없거나 창작성이 없는 학생은 발명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발명적 사고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는 교육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발명교육의 모순점을 바꿔야 한다. 발명적 사고가 창의적 사고를 만들고 도전과 창의, 협동과 이해를 통한 살아있는 경험교육, 체험교육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창작교육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하는 교육의 기회가 입학사정관제도라고 본다.

발명교육으로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 개선점, 새로운 발상의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거나 개발함으로 자신도 발명특허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 특허등록 4위의 위상을 지켜가는 비결도 3위 2위의 특허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결도 발명교육에 달려있다. 일부 기업이나 발명을 위한 발명을 하는 특정인만이 발명특허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명의 생활화는 교육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발명특허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 입학사정관제도는 한국 발명 역사에 새로운 계기점이 될 수 있다

모든 교과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명특허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발명교육 분위기를 만드는 교육환경을 추진할 때다. 이를테면 입학사정관 제도는 발명교육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발명교육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발명교육이 변화되고 점진적으로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발명을 생활화시키는 교육을 추진한다면 적은 돈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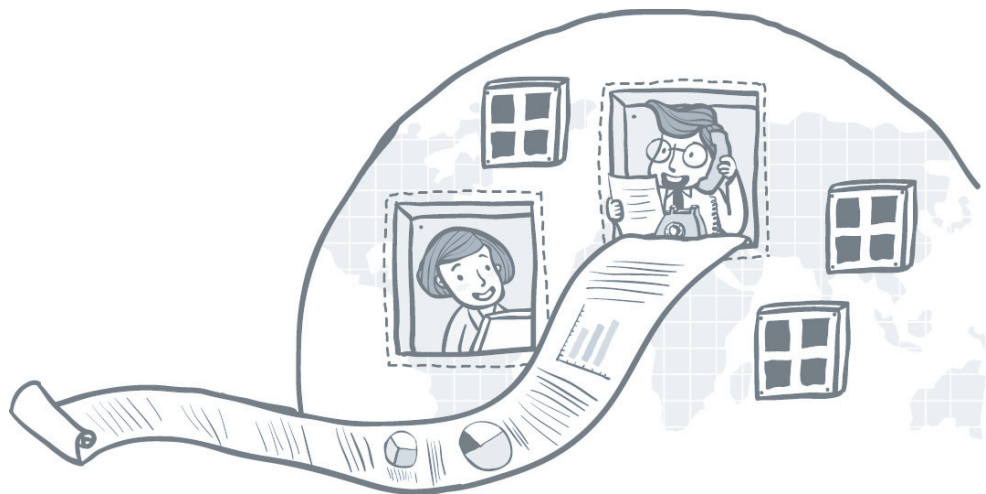
는 특허왕국의 한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2년 전 발명교육이 정식학과로 채택되면서 발명 국정 인정 교과서가 없어 발명인정 교과서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집필한 적이 있다. 발명교육을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일부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에게 발명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초등학교 학생대상으로 가르쳤는데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이 높았다. 당시 초등학교 교장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하여 교과서는 채택하지 못했지만 교과서 내용을 초등학생들에게 발명교재로 활용했던 교사의 발명적 사고에 의한 발명교육을 실시했던 성공사례다.

한 사람의 초등학교 교사의 실상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육현실이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명분과 구실을 먼저 제시하는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의 정책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급변하는 국제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학교교육은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발명은 다르다. 발명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하지 못하면 발명의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발명적 사고교육이다. 필자는 입학사정관제도 강의를 하면서 발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였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발명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발명특허 2010. 2



# 선진문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고를 만들겠습니다.

플로우네트웍(주) 김정일 대표이사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미개척 시장을 개발하여 유명가구 제조사에 서랍금고를 소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플로우네트웍(주)의 김정일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플로우네트웍(주)  
김정일 대표이사

## 1. 플로우네트웍(주)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보관의 극대화를 통한 안전한 여가 생활을 추구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출되어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금고를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테크레이션 금고로 대체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 가구 내장형(빌트인) 금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한곳에 집중·보관시켜 필요할 때 쉽게 꺼내어 쓸 수 있으며, 금고를 완전히 은폐시켜 외부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게 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금고로 당기면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맞으면 자동으로 열리고 밀면 닫히는 구조로써 남녀노소 어느 계층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의 중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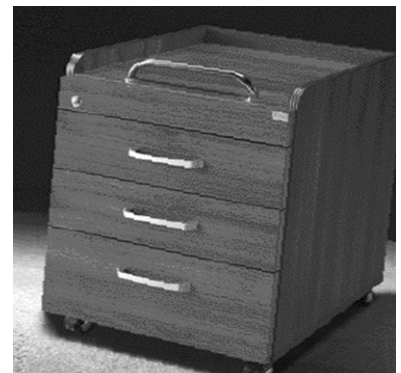
요즘 은행시간 단축, 맞벌이 부부 증가, 각 가정의 도우미 출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금값폭등(보관)으로 인한 불안감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 2. 플로우네트웍(주)의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플로우네트웍(주)는 회사를 창업한지 7년이 되었으나, 서랍금고를 시장에 본격적으로 제품화한지는 3년이 되어갑니다.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미개척 시장을 개발하여 상품화하여 메이저 건설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명가구 제조사에 서랍금고를 소개하여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업성과를 위해 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국내 및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핵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미개척시장인 서랍금고를 보관문화로 바뀌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저희 플로우네트웍(주)는 유망사업으로 글로벌 시대와 더불어 나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 기술경쟁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서랍에 내장하여 사용할 경우, 외부인이 금고를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서류 및 개인소지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무가구(이동식서랍, 업무용책상, 시스템가구, 불박이장)에 개인금고를 내장하였는데, 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하나의 가전제품으로서의 인식 변화를 통해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이 차별화된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 4. 대표이사님의 경영방침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 건설사, 유명 가구 제조사, 사무용가구제조사, 유통 및 메이저업체, 프렌차이즈 매장, 리모델링업체, 인테리어 디자인업체, 호텔, 콘도, 골프텔에 조금씩 알려져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가 되는 해에는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야기로 제품의 판로를 확충하여 조금 더 나은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메이저 업체를 대상으로 판로를 확충하여 서랍금고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최초 서랍식금고, 이동식서랍, 업무용책상 서랍 보급화에 성공한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 5.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플로우네트웍(주)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랍금고 제품은 가구류 등에 내장되어 돈이나 보석, 중요서류 등 귀중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내장형 금고로



글로벌 시대와 더불어 정보와 지식의 공유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간 문화의 차이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으며 소유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돈과 금괴만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의 척도로 치부되어 왔던 금고의 문화가 5년 전부터 핵가족화에 따른 각각의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보다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매체를 요구함에 아직은 미진한 국내에서 판로를 확충하고 선진국 보관문화를 장착해 나가는 데 필요한 아이템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선진문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고에 적극적인 투자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지하여 보다 더 차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엄청난 기득권과 함께 새로운 금고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마지막으로 CEO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던지고 매쳐도 쓰러지지 않는 파이팅으로, 뚝어오르는 열정으로 CEO를 도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상과 꿈은 가지고 있으되 용기를 가지고 너무 높은 곳부터 바라보지 말고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CEO를 꿈꾸는 도전하는 젊은이가 되길 바랍니다.

발명특허 2010. 2

# 상표등록 요건( I )



## 장혜룡

(현) 유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법무담당관실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조사관(파견)  
 제44회 변리사시험합격  
 호주 Wollongong대학 대학원 석사

## I. 들어가며

상표법에 의거 상표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상표의 등록요건이라 한다.

즉, 주체적요건과 절차적요건, 상표의 정의개념의 합치, 상표의 식별표지로서의 등록적격성 그리고 상표법에서 정한 부등록사유 해당유무 등이 상표의 등록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이번 호의 상표등록 요건( I )에서는 주체적요건과 상표의 식별표지로서의 등록적격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표법에서 정한 부등록사유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상표등록 요건(II)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II. 상표등록의 주체적 요건

### 1. 서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권리능력” 과 “권리적격” 을

갖추어야 하는데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권리적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3조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할 의사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출원인의 주관적 사용의사 유무를 심사관이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적격요건은 선언적 또는 상징적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1) 권리능력

#### (a) 의의

민법은 살아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도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b) 권리능력이 없는 자

자연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재외자인 외국인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권리능력을 인정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제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에서 재외자인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등록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사단 등' 도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도 실질적으로는 법인과 다름없는 실체를 가진 법인격 없는 단체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아닌 사단' 은 상표등록에 관한 권리자는 될 수 없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으로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는 있다.

(2) 행위능력

위의 권리능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위능력” 이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민법은 행위무능력자의 범위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위무능력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III. 상표의 식별표지로서의 등록적격성

1. 서설

우리나라 상표법은 전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요건으로서 표장의 “식별력” 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자타상품의 식별력’ 의 의미와도 같은 개념으로서 상표법

상 식별력은 등록유무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식별력을 갖춘 상표로서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표장이 ‘식별력’ 이 있는가에 귀결되므로 식별력의 개념과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식별력

(1) 의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과를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식별력에 따른 상표등록 가능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상표자체의 고유의 현저성,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과 사용정도, 광고선전 활동, 상품 품질의 우수성, 상표권자의 명성과 신용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상표등록단계에서 거래통용의 구체적인 식별력의 획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품구별표지로서의 적격성은 구비하여야 한다.

학문상으로는 어떠한 상표가 등록적격성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외관구성설, 자타상품식별력설, 독점적응력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상표법상 목적이 공익과 사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타상품 식별력설과 독점적응력설을 절충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2) 식별력의 有無와 強弱

상표는 식별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등록 가능한지는 개개의 상표를 지정상품과 함께 연관성 등을 검토해야 알 수 있지만, 식별력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에 대해 살펴본다.

1차적으로 상표구성자체의 칭호, 외관, 관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너무 흔한 명칭, 형태만으로 된 상표 등이 식별력이 없음은 자명하고, 문자상표의 경우 일반명칭, 記述상표 등은 원래부터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이다.

이에 반해 암시적 상표, 造語로 된 상표, 상품과 관련없는 용어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있고 강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식별력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실적, 거래실정, 당해상품과 서비스와의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상표출원시에는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3.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지리적 명칭, 흔한 명칭, 간단한 도형, 기타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특정

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상표법상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식별력의 유무는 획일적,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시대변천과 사회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정상품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 보통명칭상표와 관용표장

##### (a) 의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통명칭'이라 함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이러한 보통명칭에는 그 상품의 약칭, 속칭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관용상표'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표장을 말한다.

이러한 보통명칭과 관용표장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당해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함이다.

##### (b) 양자의 구분

보통명칭상표와 관용표장은 모두 상표등록요건을 결하고 있어 상표등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구성요소와 인식 및 사용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보통명칭상표'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문자'로만 구성되고,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



(and)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관용표장'은 문자이외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등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or)나 거래업계 사이에서 그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명칭이 관용표장보다 인식 및 사용주체의 범위가 더 넓다.

(c) 보통명칭의 유형

첫째, 특정상품이 매우 저명해져서 그 상품의 상표가 동종 상품의 대명사로 된 경우(박스형자동차 - jeep)

둘째, 신제품 또는 특허품의 상표가 당해 상품의 보통명칭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사용되는 경우(스테플러 - 호치키스)

셋째, 상표관리 소홀을 틈타 동종업자가 편승하여 사용한 결과 보통명칭화되는 경우(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넷째,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수요자가 상표를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라마이신)

(d) 보통명칭과 관용표장의 판단

보통명칭의 판단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통해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직감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장이 외관상 보통으로 사용된 것이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직감되지 않거나 단순히 암시 또는 강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명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인적 판단기준

보통명칭인지의 여부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평균적 지식을 가진 국내수요자 일반이나 거래업계의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는 추상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표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으나,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평균적 지식을 가진 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인적 판단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지역적 판단기준

보통명칭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극히 협소하게 한정된 특성의 지역에서 거래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전국에 걸쳐 보통명칭화되

었는지 판단하는 것도 부적당하다.

③ 시간적 판단기준

보통명칭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출원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그 상표의 출원시가 아닌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 상표관리의 중요성

상표가 보통명칭화 될 경우에 누구나 당해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상표사용자의 축적된 신용은 보호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경쟁대상자의 부당한 사용에 의하여 보통명칭화가 되지 않도록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상품명과 병기함은 물론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류나 백과사전류에 당해 상표가 상품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당해 상표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방어조치가 필요하다.

(2) 성질표시적 상표

(a) 의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품질내용을 기술할 목적으로 표시된 표장을 記述的 商標 또는 성질표시적 상표라고 한다.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장은 일반 상거래에 있어 언제나 사용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상품의 식별기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는다. 상표등록여부 판단시 거절이유가 되는 것중 본호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많다. 따라서 출원인은 성질표시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도록 표장을 창안하는 것이 요청된다.

(b) 성질표시적 상표의 구체적인 예

① 산지의 표시

해당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산지표시의 성격을 가지는 상표의 예를 들어 보면, 지정상품이 인삼이고 상표가 금산인 경우, 지정상품이 사과이고, 상표가 대구인 경우, 지정상품이 상표가 굴비이고 상표가 영광인 경우, 지정상품이 해장국이고 상표가 청진동인 경우, 지정상품이 막국수이고 상표가 춘천인 경우, 지정상품이 갈비이고 상표가 이동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품질의 표시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품의 품질표시에는 상품의 품위와 등급의 표시, 품질보증의 표시와 미감의 표시도 포함된다.

품질표시의 성격을 가지는 상표로는 지정상품이 환경 관련 상품이고 상표가 청정, 무공해, 그린인 경우, 지정상품이 녹차이고 상표가 생명물인 경우, 지정상품이 호텔업에 상표가 트래블로지인 경우에 이에 해당되고, 또한 품질보증, 우, 량, 순정, 원조, 우수, new, KS 등은 전 상품에서 품질표시 표장에 해당된다.

③ 원재료의 표시

당해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재료에는 당해 상품의 주원료거나 주요 부품은 물론 보조원료 또는 보조부품이라 하더라도 동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품질표시의 성격을 가지는 상표로는 지정상품이 두부이고 상표가 콩인 경우, 지정상품이 창문틀이고 상표가 알미늄인 경우, 지정상품이 브라우스이고 상표가 silk인 경우, 지정상품이 금고이고 상표가 steel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효능표시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물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효능표시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능이나 효과의 표시

는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한다.

효능표시의 성격을 가지는 상표로는 지정상품이 화장품이고 상표가 보들보들인 경우, 지정상품이 전자렌지이고 상표가 원터치인 경우, 지정상품이 가구이고 상표가 우아미인 경우, 지정상품이 컴퓨터이고 상표가 효율적인 network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⑤ 용도표시

당해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지정상품의 사용목적, 사용처, 수요계층, 오락용 또는 레저용 기타 용도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를 말한다.

용도표시의 성격을 가지는 상표로는 지정상품이 비료이고 상표가 원예인 경우, 지정상품이 콜라이고 상표가 diet cola인 경우, 지정상품이 의류이고 상표가 베이비인 경우, 지정상품이 운동용품이고 상표가 프로용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⑥ 기타 기술적 표시

상술한 이외에 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표시 등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수량표시 등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예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운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c) 판단 기준

기술적상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적, 지역적, 시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인적 기준은 상표의 의미나 내용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역적 기준은 '국내'에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하고, '외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적 기준으로는 상표출원시가 아닌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3) 현저한 지리적 명칭

(a) 의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명, 저명한 지명, 유명한 관광지, 변화가, 행정구역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지명 및 지리적 장소를 나타내는 보통 형태의 지도가 포함된다.

(b)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구체적인 예

일반적으로 도시명인 핀란드, Oxford, Vienna, Manhattan, Georgia, London, 뉴욕, 장충동왕족발, 종로학원 등과 관광지인 한라산, 충주호, 진도, 천마산곰탕 등 그리고 역사적 문화재인 동대문, 남대문, 불국사, 해인사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나, 지리적 명칭 내지는 관광지라도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알려지지 않은 장안천, 가거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c) 판단 기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업계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사전류에 게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인적 기준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는 정도이어야 하고, '통상적인 일반수요자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적 기준은 '국내'에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하고, '외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적 기준으로는 상표출원시가 아닌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4)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a) 의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한다.

(b) 구체적인 예

외국인의 성은 비록 당해 국가에서 흔히 있는 성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성이 아닌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내에서 흔한 김씨, 이씨, 박씨, 윤씨 농방 등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회장, 총장, 사장 등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은 흔한 명칭으로 본다.

(c) 판단 기준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지의 판단은 전화번호부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하여야 하며, 특정한에게 독점시킬 경우 같은 성이나 명칭을 가진 자에게 불충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인적 기준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는 정도이어야 하고, '통상적인 일반수요자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적 기준은 '국내'에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하고, '외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적 기준으로는 상표출원시가 아닌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a) 의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함은 간단하면서도(and) 흔한 표장만을 말한다. 따라서 간단하거나(or)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b) 구체적인 예

① 문자상표

문자상표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된다. 그러나 닭, 별과 같이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숫자상표

숫자상표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10단위 숫자의 2개와 +, -, x, = 등의 부호가 결합되거나(예, 33+66) 10단위 숫자를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결합한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로 결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도형상표

도형상표는 흔히 있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

나 기호 또는 삼태극 등의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입체상표

입체상표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c) 판단 기준

인적 기준은 '일반거래자' 나 '수요자' 에게 널리 인식되는 정도이어야 하고, '통상적인 일반수요자의 평균적인 인식'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간적 기준으로는 상표출원시가 아닌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6)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a) 의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인에게 권리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충적 규정' 이다.

(b) 구체적인 예

①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단기 또는 서기로 연도를 나타내거나 연도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과 사람, 동식물, 자연물 또는 문화재를 사진, 인쇄 또는 복사하는 등의 형태로 구성된 표장

②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과 http://, www. @ 등

③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

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

예컨대, Land, Mart, Club, Plaza, World, outlet, House, City, 마을, 마당, 촌 등이 이에 해당된다.

IV.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표장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결합된 표장이라 하여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생긴 것이고 동종업자 보호차원에서 특정인의 독점사용을 불허할 이유도 상실되었기 때문이다.(상표법 제6조 제2항)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도 식별력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와 같이 상표로서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이의신청사유가 된다. 나아가 상표권이 설정된 후에 흠결이 발견된 경우라도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즉, 제3자로부터 무효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쌓은 명성과 신용에 타격을 받음은 물론 소송비용과 시간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장이 식별력을 갖추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식별력 유무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상표등록 후에는 식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표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요청된다.

# 심판절차 일반

## 김 현 호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강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특허법인 맥 대표 변리사



## 제1절 심판의 개시

### I. 심판청구서의 제출

#### 1. 의의

- 1)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는 심판행정실에서 접수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 및 심판장을 지정하여 합의체로 하여금 심판하게 한다.(특허법 144 내지 146)
- 2) 특허심판원장이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sup>1)</sup>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모사전송기로 통지하여야 한다.(특시규 58)

### 2.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1) 통상적인 심판의 경우

##### ① 일반적 기재사항

심판청구서에는 i)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ii)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iii) 심판사건의 표시, iv) 청구의 취지<sup>2)</sup>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140 ①)

##### ② 추가적 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1) 통상실시권하여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일반적 기재사항 외에 i)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ii)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

1) 심판에 관한 서류의 불수리 사유에 대하여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

2)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무효심판의 경우 “특허 제○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과 같이 기재한다.

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iii)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140④)

2)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특허법 140③),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특허법 140⑤)

**(2) 특허거절결정의 경우**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보통의 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i)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ii)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iii)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iv) 발명의 명칭, v) 특허거절결정일자, vi) 심판사건의 표시, vii)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140의 2)

**3. 중복된 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특허법 154⑧ 준용 민사소송법 259)

**II. 심판청구서의 보정과 요지변경**

**1. 심판청구서의 보정**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청구방식의 불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기 등이 있을 때에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청구이유의 보정은 언제든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특허법 140②단서)<sup>3)</sup>

**2. 요지변경의 금지**

1)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특허법 140②본문) 구체적으로는 i) 당사자 ii) 사건의 표시 iii) 청구의 취지의 동일성을 해치는 범위의 보정은 요지변경이 된다.

2) 요지변경을 금지하는 이유는 만일 요지변경을 함부로 인정하면 심판사무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하고 심판절차를 지연케 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방어에도 곤란을 주기 때문이다.

**3. 요지변경으로 보는 구체적인 사례**

**(1) 당사자의 보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보정은 오기의 정정과 같이 그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지변경이다.<sup>4)</sup> 공유특허권자 중 일부만을 심판의 당사자로 한 후 나머지 공유자를 보충하는 경우도 요지변경으로 본다.

**(2) 사건의 표시 및 청구취지의 보정**

1) 사건의 표시, 즉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등의 표시의 보정은 오기의 정정과 같이 심판청구대상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지변경이다.

2) 특허무효심판의 대상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발명으로부터 별개의 특허발명으로 변경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이다.

3) 정정무효심판의 청구를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로 하는 보

3) 심판청구서에 강제1호증(가)호의 물품과 그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잘못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67. 3. 7 선고 64후 20판결, 특허권리)

4) 증거와 변론취지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한 "박영의"는 "박규제"의 별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청구는 "박규제"가 제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박영의"를 "박규제"로 정정을 하면 족한 것이다.(대판 1967. 8. 29 선고 67후 9판결, 특허무효)

정은 요지변경이다.

### III.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

#### 1. 방식심리와 결정각하

##### (1) 심판청구서의 방식심리

방식심리란 심판장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적식심리, 즉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장은 i) 심판청구서가 법 제140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ii) 심판에 관한 절차가 제3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iii)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iv)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특허법 141①)

##### (2) 심판장의 결정각하

심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특허법 141②,③)

##### (3) 불복방법

심판장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결정각하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186)

#### 2. 적법성 심리와 심결각하

##### (1)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리

적법성 심리란 심판관합의체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심판청구가 적법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심판청구요건 내지 적법요건에 대한 심리를 말한다. 이러한 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심판관합의체는 본안심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 (2) 심판관합의체의 심결각하

심판관합의체는 적법성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법 142) 즉,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기 전에 심결각하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기회를 준 후에 심결각하할 수도 있다.

##### (3)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심판청구요건 내지 적법요건의 흠결로 인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는 경우로서,

i)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ii) 실존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구, iii)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iv)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즉 공유자 중의 일부만을 심판의 당사자로 하거나 이해관계 없는 자가 한 심판청구, v)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심판청구, vi) 특허심판원에 이미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심판청구(민사소송법 259 준용), vii) 심판청구시에는 적법한 심판청구였으나 심판청구후 대상출원이 취하·포기되거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변경한 경우, viii)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판청구 등은 심결각하의 대상이 된다.

##### (4) 불복방법

심판관합의체의 심결각하에 대하여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186)

### IV. 우선심판

#### 1. 심판의 처리원칙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히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의 비교]

		방식심리(특허법 141)	적법성심리(특허법 142)
의의		심판장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적식심리, 즉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관합의체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	주체	심판장	심판관합의체
	대상	1.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 ① 法 제140①③④⑤ ② 法 140의2①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행위능력(특허법 3) 위반 ② 대리권범위(특허법6) 위반 ③ 수수료 불납 ④ 이 법에서 정한 방식 위반	1. 실존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구 2. 심판청구기간 경과후의 심판청구 3. 이해관계 없는 자의 무효심판청구 4. 일사부재리에 위배된 심판청구 5. 심판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 공유자 전원이 청구인/피청구인이 되지 않은 경우 7. 불복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8. 기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
절차		보정기회부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재량)
효과		심판청구서 결정각하	심판청구 심결각하
불복		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소 제기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심판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소 제기

## 2. 우선심판의 대상

### (1)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

다음과 같은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선심판할 수 있다.

- i)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 ii)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 iii) 국제간에 지적재산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처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
- iv) 공해·환경, 방위산업, 수출촉진 등 공익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 v)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소멸 또는 대상권리의 소멸 등으로 그 청구가 부적합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건

### (2) 직권에 의한 우선심판

다음과 같은 사건은 당해 심판부가 직권에 의하여 우선심판한다.

- i)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건
- ii)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iii)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iv) 처리하여야 할 사건과 관련되어 병합심리를 요하는 사건
- v) 지적재산권 관계법에 의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3. 우선심판의 신청 및 처리절차

### (1) 신청절차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은 위에서 규정한 사건에 대한 각각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 처리절차

- 1) 심판행정실은 심판청구시 해당 사건이 우선심판대상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포대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주심심판관에게 인계한다.

2)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주심심판장(관)은 우선심판대상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우선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

3) 주심심판장(관)은 우선심판대상으로 결정된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증거조사·검증 또는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사건의 조기 성숙을 유도함으로써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심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절 심리

### I. 심리의 의의와 방식

#### 1. 심리의 의의

심판장의 방식심사를 거친 후에 심판관합의체에 의한 심결각하의 경우를 제외하면 심판의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심판의 심리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심판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 2. 심리의 방식

##### (1)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1) 서면심리라 함은 심판을 서면에 의하여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심판을 서면심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일단 제출된 서류는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심판정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할 수 있으나 서류가 많아지고 서면작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단점도 있다.

2) 이에 반하여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구술로써 진술한 것이 심판에 참작되는 방식이므로 심리가 활기를 띠고 의문점을 즉시 석명하여 쟁점을 발견, 정리하기가 용이하나 진술이 탈락되기 쉽고 심판정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는 구술설명만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2) 특허법의 태도

1) 심판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방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당사자계심판에서는 구술심리를 바탕으로 하고 서면심리로 그 단점을 보충하게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결정계심판에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로 이를 보충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특허법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특허법 154①)고 하여, 심판실무상 서면심리가 원칙임을 반영하고 있다.



## II. 심리에 관한 제원칙

### 1. 직권주의

#### (1) 의의

1) 직권주의라 함은 당사자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심판관이 직권으로 심판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심판의 기초로 삼을 뿐 아니라(직권탐지주의) 심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심판관이 주도권을 갖는 것(직권진행주의)을 의미한다.

2) 특허심판제도가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특허제도가 사익보호와 아울러 산업발전이라는 공익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사건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사건과 달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의 이해에 관한 문제 등 대세적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직권탐지주의

##### ① 의의

1)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심판자료의 수집에 관하여 심판관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즉 당사자의 주장여하에 불구하고 심판관이 직권으로 어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탐지주의란 심판자료의 수집책임이 심판관에게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이는 소송의 실체에 관한 자료의 주장과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결할 수 없고, 소송상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에 구속되고 그

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특허심판은 이러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직권심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당사자의 처분권의 제한이다. 다만,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는 심판부의 권능이지 의무는 아닐 것이어서 직권으로 탐지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② 직권심리

1) 특허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특허법 159) 예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이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규정(특허법 25)에 위반됨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리과정에서 특허요건의 흠결을 발견한 때에는 심판관은 이것을 이유로 무효심결을 할 수 있다.

2) 그러나 직권심리는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sup>5)</sup>

3) 심판관은 직권에 의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특허법 159) 이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위반한 심결은 위법하게 된다.<sup>6)</sup>

##### ③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심판관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특허법 157①) 심판장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배척함에 그쳐야 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것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한 것은 위법이다.(대판 1970. 12. 22, 70후20)

6) 대판 1970. 11. 24, 70후50; 대판 1971. 3. 9, 71후1; 대판 1984. 2. 28, 81후10.

7) 심판 실무상 병합의 요건은, i)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할 것, ii) 2 이상의 심판이 동일 종류일 것, iii) 심리종결 전일 것을 필요로 한다.(심판편람 2006, 190면)

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특허법 157⑤)

④ 당사자의 처분권의 제한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특허심판에 있어서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민사소송법 220)가 인정되지 않으며, 자백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결과 사실의 증거에 의한 확정 여부가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3) 직권진행주의

① 의의

직권진행주의란 심판절차의 주도권이 당사자가 아닌 심판관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을 당사자주의라고 한다.

② 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특허법 158) 따라서 구술심리기에 당사자의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행한다. 그러나 당사자쌍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행할 수 없다.

③ 기일의 지정 · 변경과 절차의 중지

심판장은 기일을 지정 · 변경하거나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고(특허법 152③), 심판관은 심판절차의 중지 또는 중단하거나 중단된 절차의 수계를 명할 수도 있다.(특허법 22, 23)

④ 심리의 병합 ·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 이상의 심판(예컨대 적극적 확인심판과 소극적 확인심판 등)에 대하여 편의에 따라 그 심리나 심결을 병합 또는 분리하여 할 수 있다.(특허법 160) 그러나, 심리나 심결을 병합했다고 하여 2 이상의 심판사건의 하나의 심판사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편의상 동일사건을 동일한 심판관이 동시에 심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sup>7)</sup>

2. 구술심리에 관한 제원칙

1) 서면심리의 경우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외에 달리 언급할 것이 없으나,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그외에도 구술변론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한 다음의 여러 원칙이 적용된다.

2)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개심리주의, 특허법 154③) 그리고 심리에 있어서 양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쌍방심리주의) 이를 위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 중지제도(특허법 20, 23), 대리인제도(특허법 10), 직권탐지한 심판자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제도(특허법 159)를 마련하고 있다.

III. 심리의 실시

1. 심리의 경과

(1) 서면심리의 경우

심판관의 면담제도<sup>8)</sup>를 활용하여 서면심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심판관은 명세서의 기술내용 또는 기재내용의 이해가 곤란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명세서의 불비를 거절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 먼저 면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기타 심리촉진상 필요한 경우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등도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술심리의 경우

① 기일의 지정

심판장은 구술심리에 의하여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8) 심판편람 2006, 91면.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특허법 154④)

② 기일의 변경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판장은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특허법 15③)

③ 구술심리의 순서

개정을 하면 당사자 및 대리인의 출석을 확인한 후에 심판 청구인 측의 청구취지 및 이유의 요지 진술 → 피청구인 측의 답변취지 및 이유의 요지 진술 → 답변에 대한 청구인 측의 반박 및 반박에 대한 재답변 → 심판장의 심문의 순서로 심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아울러 증거조사를 행할 수도 있다.

④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특허법 154⑤), 이 조서에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특허법 154⑥) 또한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특허법 154⑦), 형식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153) 및 실질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154)의 기재, 서면 등의 인용첨부(민사소송법 156) 및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하도록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59) 또한 심리방식에 관한 기간의 준수는 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158), 관계인의 조서낭독청구권(민사소송법 157)이 인정된다.

⑤ 통역

심리에 참여하는 자가 국어에 통하지 못하거나 농아자인 때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아자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특허법 154⑧, 민사소송법 143)

2. 심리의 종결 및 재개

(1) 심리의 종결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리를 마치고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심리종결의 통지(실무상 이는 “결심통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특허법 162③). 심결은 이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특허법 162⑤) 이는 심판의 지연을 피하려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심리종결의 통지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심리종결의 통지를 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심결을 하여도 무방하다. 심리종결의 통지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한다.(특시규 66분문)

(2) 심리의 재개

심리종결통지를 한 후라도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특허법 162④) 심리종결통지 후에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당사자 등이 심판에서 공격·방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다. 심리종결통지 후에 제출되어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한 서류의 반환 전에 심리가 재개되면, 그 서류를 유효하게 심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특시규 66단서)

발명특허 2010. 2



# PUZZLE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남·여)

주소: .....

전화: ..... HP

□ □ □ -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1 3 5 - 9 8 0

정신문화사업 보조금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10월



월간 **발명특허**  
2010. 2

독자카드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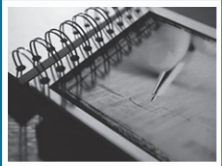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2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6					6	7
9	10			13		
			12			
11					15	
			14			





IP Report

IP Information

IP Column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명이야기

80

**건강하게 삽시다**

장애인의 구강보건관리

82

**즐거운 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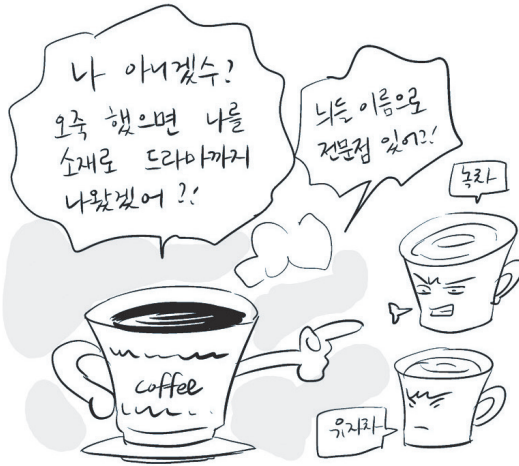
84

# 아무도 몰랐던 **물**래발명이야기

## 「 커피 」

글·그림 김민재

우리가 음료로 마시는 차의 종류에는 셀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중화된 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



커피가 오늘날 세상에 등장할수 있었던 것은 이디오피아의 칼디(kaldi)라는 사람에 의해서라고 전해지는데



영초를 들보던 어느날 그는 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영초들이 어느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더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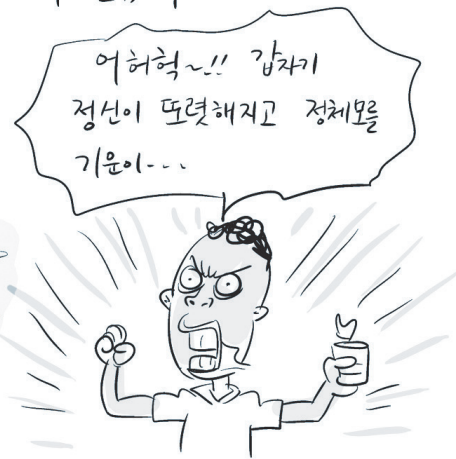
프랑스 양전한 영초녀석 조라 흥분한듯 활발기 뛰노는 것이었다.



기이한 광경을 접한 칼디는  
염소들이 먹은 붉은 열매를  
살펴보았다.



그는 곧 그 열매를 집으로  
가져가서 끓인후 그 물을  
마셔보았다.



이후 칼디는 이 음료를 마을사람에게 소개  
해 주었고 얼마가지 않아 마을고유의 음료가  
되었다.



'커피'라는 말의 유래는  
당시 마을 이름인 '카바(Kava)'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흘러 들어가  
'카페(cafe)'가 되었고  
영어로는 '커피(coffee)'  
가 되었다고 한다.





## 장애인의 구강보건관리

임지준(따뜻한 치과병원 원장)

진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인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충치나 잇몸질환과 같은 구강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충치나 잇몸질환과 같은 구강병이 잘 생기고 구강 건강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 이루어진 '전국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다소 빗나갑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학교 및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치아 우식증 경험률은 비장애인 (2003년도 전국 구강 건강 실태조사 결과)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한 우식 치아와 치아 우식 증으로 인해 빠게 되는 치아의 비율은 장애인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 우식 발생은 비슷하였으나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치아를 빠게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치주 질환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모든 장애유형에서 불량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구강 건강 문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평소 구강위생관리가 어렵고, 일단 구강병이 발생하게 되면 적기에 치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구강건강관리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구강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닦기-치실 사용하기-정기적인 치과 방문 및 검진'이라는 법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강건강관리의 기본은 뭐니뭐니해도 이닦기(양치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치와 잇몸질환은 구강 내 세균에 의해 일어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입안 세균은 '치면 세균막'이라는 끈적이는 막의 형태로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고, 이를 통해 충치와 잇몸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구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원인 '치면 세균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일단 구강 내에 형성된 '치면 세균막'을 효과적

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닦기(양치질)입니다. 식후 3분 내에 3분 동안 하루 3번 이를 닦지는 3-3-3 방법,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3-3-3을 지키기란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닦기는 짧은 시간에 대충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번을 하더라도 최소 5분 이상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꼼꼼하게 이를 닦는다면 하루 정도는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장애인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이닦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충분한 시간 동안 닦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애인들의 경우는 자원 봉사자들이, 재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5분 이상 이닦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장애인 구강건강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아 사이와 같이 칫솔로 잘 닦이지 않는 부위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닦기와 함께 하루 1회 이상 치실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잇몸질환과 충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치아만 하루에 한 번 5분 이상 잘 닦으면 구강건강이 지켜질까요? 우리가 하는 이닦기는 눈을 감고 방 청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이나 치면 세마를 통해 이닦기로 해결되지 않는 치면 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구강질환예방은 물론 조기 치료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아무래도 평소 구강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편안하게 내원할 수 있는 치과가 생각보다 드물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치과에 자주 방문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치과진료비 장벽을 낮춰주기 위하여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적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실시를 하거나, 치과치료 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주는 등의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된 장애인 전문치과병원이 설립되고 있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수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발달장애나 지적 장애와 같은 통상적인 치과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아닌 장애인이라면 가까운 개인 치과의원에 편안히 방문하여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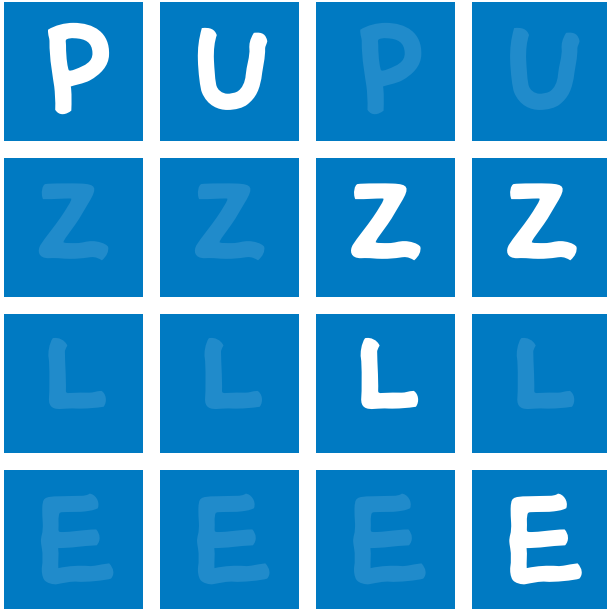
잘 먹는 것은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입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아와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결국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이차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장애인 환자 본인의 관심은 물론, 보호자 및 치과 의료인들의 노력,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하나가 된다면, 구강건강문제가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을 날도 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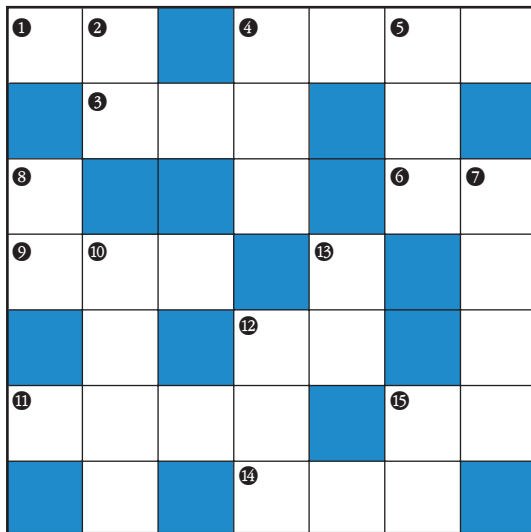


### 구강건강을 위한 3단계

1. 매일 양치질한다.
2. 매일 치실을 사용한다.
3. 규칙적으로 치과검진을 받는다.



함  
께  
플  
어  
봅  
시다



1월호  
즐거운 퍼즐 정답

일	구		대	중	매	체
	도	제	법		판	
항			원		성	구
약	소	국		배		비
	특		대	독		문
공	공	부	조		장	학
	제		영	부		인

즐거운 퍼즐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가로열쇠

1. 조선 시대에, 유수(留守)를 두었던 네 곳의 도읍지. 개성, 광주(廣州), 수원, 강화를 이른다.
3. 결혼식 때에 신부가 머리에 써서 뒤로 늘이는, 흰 사(紗)로 만든 장식품
4. 둥근 모양의 도리로 꾸민 집으로, 향교·서원·정자 건축에 주로 이용하였다.
6. 나무, 가죽, 고무 따위의 물건을 붙이는 데에 쓰는 물질. 상품명에서 나온 말이다.
9.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퇴적암. 수중 동물의 뼈나 껍질이 쌓여 생김, 석여 있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을 띤다. 시멘트, 석회, 비료 따위의 원료로 쓴다.
11. 정상적인 상태에서 눈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가장 똑똑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 보통 건강한 눈은 20~30cm의 거리인데, 근시안은 이보다 가깝고 원시안은 이보다 멀다.
12.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갓의 무늬. 또는 그것이 남긴 흔적. 사람마다 다르며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아니하여 개인 식별, 인장 대응, 범치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14. 김소월이 지은 시. 산에 피고 지는 꽃을 소재로 하여 삶과 자연 모두에 스며 있는 근원적 고독을 노래한 작품이다.
15. 볼링에서, 네 번 연속 스트라이크를 치는 일

### 세로열쇠

2. 토목, 건축, 기계 따위의 구조나 설계 또는 토지, 임야 따위를 제도기를 써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그림
4. 함경북도 웅기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1963년에 3만 년 전의 유물인 붉은간토기, 방추차와 함께 다수의 타제 석기 및 석기 제작지가 발견되었다.
5. 포르투갈에 있는 항구 도시. 대서양에 면하여 있으며, 섬유·제지·제유·담배 따위의 공업이 활발하다. 포르투갈의 수도이다.
7. 미국의 영화 제작소이며,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비드 게펜이 설립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슈렉, 샤크, 헛지 등이 있다
8. 달, 태양 따위의 인력에 의하여 해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 보통 12시간 25분의 간격으로 하루에 두 번 일어난다.
10. 양복의 포켓 등 품속에 넣고 휴대하는 소형의 시계
12.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있는 산. 소백산맥 남쪽에 있는 산으로 청학동(靑鶴洞), 칠불암(七佛菴) 따위가 유명하다.
13. 대포의 탄알이 나가는 구멍
15. 일정한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용매에 용해될 수 있는 만큼 용해되어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 상태



## IP News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01

## 특허 심사기준,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개정에도 참여한다!

특허청, 고객 친화형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 오픈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출원한 발명이 어떤 심사기준으로 특허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개정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http://www.kipo.go.kr/patguideline>)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오픈했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웹사이트에서는 각 항목별로 적용 예제,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도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되어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 위치

# 02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IP정책 추진

고정식 특허청장, 5일 시무식서 강조

고정식 특허청장은 “국가적 중점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기업이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도록 핵심녹색기술 획득전략과 녹색기술조기 권리화,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를위해 “신성장 동력사업 6개 기술분야의 표준특허 획득 지원사업과 첨단부품 소재 8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대상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어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IP5) 체제를 통해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혁에 적극 기여하고, 최빈국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경험을 전파,공유하여 G20 위상에 맞는 국가 품격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지식재산행정체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03 특허정보 검색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의 높은 이용 증가를 보이고 있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의 이용 편의성 및 특허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지난 1월 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KIPRIS(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의 특허정보를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며, 주로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동향과약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서비스하는 주요내용은 미국·일본·호주 등의 해외 상표 검색서비스와 미국·일본·유럽 등의 해외특허 행정진행정보 조회 서비스 등이다.

또한, 검색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색어 입력 시 검색어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기능, 입력된 검색어에 대한 유사어 및 외래어 자동 확장 기능, 검색된 결과에 대한 재분류 기능 등을 추가하였다.

이밖에도 특허청 심사관용 검색 DB를 공동 활용하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국제출원공보 건수를 33만 여건 확대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KIPRIS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검색 DB의 공동 활용을 통한 운영인력 및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 04 한-핀란드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특허청은 지난 1월 4일부터 한-핀란드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은 간편한 절차로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며, 새롭게 핀란드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함으로써,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국은 총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출원인들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일본, 미국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도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의 확대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간 특허심사 분야의 협력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핀란드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2010년 1월 4일부터 1년간 시범실시되며,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1 2010년 시무식, 새로운 출발 다짐



우리회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고객을 위한 기관으로의 도약”을 당부했다.

이어, 최종협 상근부회장과 박봉석 인재개발본부장, 강성용 사업지원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배식을 하며 따뜻한 점심을 함께 했다.

# 02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 육성 첫 발 내딛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KAIST·POSTECH과 협력하여 차세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기반 영재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은 MS의 빌 게이츠, 구글(Google)을 공동창업한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와 같이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를 일컫는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KAIST와 POSTECH에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설치하였으며, POSTECH 교육원 개소식은 지난 1월 27일 POSTECH에서 개최되었다.

# 03 우리회 임직원 워크숍 성공적 개최

지식재산기반의 초일류 전문기관으로의 성장 다짐



우리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LG전자 연수원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과 노사간 상생협력의 장을 통한 소통기반 조성, 전사 비전과 미션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내부성과 관리제도의 정착,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고도화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경영선진화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지회를 포함한 우리회 임직원 전원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2010년도 전략과제 발굴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분임별 토의가 있었고, 특강시간에는 3P자기경영연구소 강규형 대표이사가 '성공을 바인딩하라'라는 주제로 지식근로자들의 라이프 플래너에 있어 절대적 요소인 시간·목표·기록·지식관리를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개인의 활동 패턴을 조직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전선포를 통해 우리회 임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원동력으로 창조경영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기관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기반의 초일류 전문기관으로의 성장을 다짐하였다.

## 월간 「발명특허」

###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A4(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7

###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대전지회	이상복	박명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5-1 2층 (대전한일병원 근처)	042-638-4307
강원지회	차명진	송상엽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발명진흥팀 김민국 (Tel, 02-3459-2797, Fax, 02-3459-2799)

# 지식재산 창출 · 관리 · 활용 · 사업화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발명에서 사업화까지”  
한국발명진흥회로 오시면 해결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발명정책의 가교역할을 하며,  
발명가를 대표하여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으며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이 한 개의 발명특허를 갖는 나라로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발명진흥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 음주전후 숙취해소 정말 좋아요 여명808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한국표준협회  
로하스인증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황금 나비상  
2005/06/07/08/09 KSA한국표준협회

소비자월빙지수 5년 연속 1위

세계 발명왕  
상상경천

- 제4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 세계10대 발명전 대상 수상

LOHAS 인증을 확인하세요

다미나909®  
세계 10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주식회사 그램이

http://www.glami.com 소비자 상담전화 080-4073-808  
가까운 지사, 약국,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